

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 2

- 제6차 워크숍 -

2016. 5. 2.



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 2 - 제6차 워크숍 -

2016. 5. 2.



일 정

1. 일 시 : 2016. 5. 2(월) 11:00 ~ 17:00

2. 장 소 : 만복림(서울시 중구)

3. 주 제 : 공간정보 관련 우리나라 법제 및 해외법제 동향2

4. 일정 및 발표주제와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김윤정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일 정	발표주제							
11:00~12:00	1. 우리나라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축법센터 최종권 박사)							
12:00~14:00	오 찬							
	2. 일본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허대원 박사)							
14:00~16:00	3. 독일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공간정보연구원 임형택 박사)							
	4. 프랑스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박사)							
	[종합토론]							
16:00~17:00	- 강영기 교수(고려대학교)							
	-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 연구보조원 : 조근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오미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목 차

제1주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11
I. 공간정보 법제의 의의11
1. 공간정보의 특성11
2. 공간정보정책의 법제화12
3. 공간정보정책의 성과와 평가13
Ⅱ. 우리나라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14
1. 공간정보법제와 공간정보 관련 개별법의 관계 14
2. 공간정보 관련 개별법16
3. 공간정보법과 개별법의 관계 20
Ⅲ.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21
1. 법체계 상의 문제점21
2. 조직(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23
제 2 주제 일본의 지리공간정보 29
I .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32
Ⅲ.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34
Ⅳ.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36
제 3 주제 독일의 공간정보 법제41
I. 개 관···································
1. / 5! 4]

Ⅱ. 유럽연합 지침	42
1. 유럽연합에서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2007/2 지침	42
2. 유럽연합에서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95/46 지침	63
Ⅲ. 독일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	75
1.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	75
2. 연방 정보보호법	83
3. 독일 지적법	85
4. 최근의 동향	91
제 4 주제 프랑스에 있어서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	· 95
I . 개 념	95
Ⅱ. 발전과정	98
1. 발생 - 地籍	98
2. 발전 - 지적의 전산화, 현대화	98
3. 변화 - 지오포털	99
Ⅲ. 추진체계	102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MEDDE) 국가지리정보위원회(CNIG) 	
3.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IGN) ····································	104
Ⅳ. 관련 법제 - 통합환경법전 법률 및 시행령	104
1. 유럽의 INSPIRE지침	104
2. 프랑스의 통합환경법전	105

V	. 시시	나점	:	관계	기관의	협력	내지	공조의	관점에서	107
<	참 고	문	헌	> ·····						109

제 1 주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와 문제점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축법센터 박사)

Ⅰ. 궁간정보 법제의 의의

1. 공간정보의 특성

공간정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로 의미의 확장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사회현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정립 및 정책의수립은 사회현실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환경의 진보속도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형태도 2차원적이고 정적인 정보에서 이동객체에 적합한 3차원적이고 해양공간정보와 같은 동적인 정보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대상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급자 중심에서 민간기업, 일반 시민 등 사용자(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공간정보 구축업무를 각 행정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앞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

¹⁾ 정동훈,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28면.

²⁾ 주현종,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국토』, 통권 347호, 2010, 18면.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간정보정책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종이지도를 수치지도로 대체하면서(Digitalizing) 디지털 정보구축을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각 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화재·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왔다.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GIS구축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제2차 국가 GIS사업(2001년~2005년)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00년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지리정보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활용체계 구축, 지리정보 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6년에는 제3차 국가 GIS 기본계획(2006년~2010년)이 수립·시행되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그 가운데 자료의 중복적인 구축과기능 및 조직의 분산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GIS, 측량, 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공간정보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국토정보정책관'을 신설하였다.

한편 종래 국가지리정보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지리정보'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공간정보'의 개념으로 이해됨으로써, 동 법의 개정내지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8월에는 동법을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편 2009년 2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간정보산

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년)이 수립되었고, 기본공간정보·표준·기술개발·유통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의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활용체계및 공간정보산업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3)

2014년 4월에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체계 개편의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종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과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하였다.4) 이와 함께 기존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통틀어 '공간정보 3법'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사항이법적 으로 그 기반이 완성되었다.5)

3. 공간정보정책의 성과와 평가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는 행정분야, 민간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

³⁾ 국토해양부,『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10, 11면.

^{4) 2009}년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 법의 주된 목적이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법률의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 되었다.

⁵⁾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menuno=2770) '공간정보 3법 시행'

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은 새로운 신사업을 창출하게 되었고, 고부가 가치산업 분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둘째, 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조사 및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시스템이 정비되었다. 넷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과학화 및 투명성을 갖게 되었다.6)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 및 그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IT기술과 행정주체의 발빠른 대처에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지만 주요 공간정보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에서의 공간정보정책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법의 제정 및 기본법으로의 변화를 통해 공간정보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입법을 통해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및 계획중심의 사고는 법적 안정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보면, 행정청의 주요 공적장부 및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국한되어있어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산업기반조성, 환경보호 등의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공간정보 법제의 체계

1. 공간정보법제와 공간정보 관련 개별법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GIS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제 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아날로

⁶⁾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 20~23면.

그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국가지리정 보체계구축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국가지 리정보법'이 제정되었지만, 동법은 '공간정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7) 이에 따라 2009. 2. 공간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공 간정보에 관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2014. 6.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의 7개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심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 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였다.8)

공간정보법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해 온 국가지리정 보체계와 국토공간에 관하여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한편, 이를 연계·통합하여 국 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 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 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 개별 행정 청에 의해 행해졌던 다양한 국토이용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보구축 은 여전히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상당수의 개별법에서도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⁷⁾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라 하고, 이러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지리정보체계"라 하였다.

⁸⁾ 국회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4, 3면.

많은 사항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개별 법에 의한 각종 조사 및 정보구축은 본래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 이 주된 것이고, 다만 그러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 본적) 공간정보가 바탕이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 게' 공간정보의 수집 · 저장 · 가공 · 분석 · 표현 · 관리 · 활용 등을 입 법목적으로 하는 공간정보법제와 토지이용규제 및 각종 도시계획수립 등을 목적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기초조사를 근간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개별법은 입법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현행법은 공간정보법제 와는 달리 개별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간정보를 다루게 되는 '공 간정보 관련 개별법제'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개념을 폭넓게 파악하여 모든 공간정보의 수집 등을 규율하는 법제와 좁게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과 체계구축 등을 규율하는 법제로 구분되며,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의의 공간정보법 제'로 파악하는 것이며, 공간정보 3법 등의 의미로 좁게 보는 경우에 는 '협의의 공간정보법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간정보법 제라 하면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간정보 관련 개별법

(1) 개별법의 특징과 현황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즉 공간정보에 관한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은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9 또한 지

⁹⁾ 개별법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조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는 개별법은 130여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첫째, 도시개발 및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의 계획법 및 개발법제상의 기초조사 등, 둘째, 국유재산·광물자원·수산자원 등의 자원의 관리를 위한 법제상의 조사, 셋째, 재난안전·교통안전·보행안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공간정보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 넷째, 대기환경·자연환경·토양환경 등 환경관련 법제상의 조사, 다섯째, 관광산업진흥·김치산업진흥·소금산업진흥 등 산업진흥법제상

하부분에 관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10)

국토기본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별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조사기관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에 의한 기초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미리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국유재산법상의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개별법상의 각종 조사는 개별법상의 입법목적달성 또는 개별행정행위의 결정을 위한 근거목적으로행해진다.

개별법상의 각종 조사 및 정보구축은 본래의 행정행위(도시계획의 수립,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 부수적이고 부종적인 성격을 가지 게 되므로, 본래의 행정행위에 따른 조사주체, 조사방법, 시기, 내용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개별법상의 공간정보 조사 및 정보구축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부족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유·공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사는 개별행정청의 전문적인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개별법상의 조사의 기초를 이루

의 공간실태조사, 여섯째, 문화재관리를 위한 법제상의 기초조사 등 매우 방대하다. 10) 정동훈, 앞의 보고서, 44면.

는 토지의 기본적 공간정보, 즉 지형·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등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

2) 조사의 중복

국토계획법, 건축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개별법은 입법목적에 맞도록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개별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어 중복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된다. 이처럼 개별적인 조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사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며, 조사내용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비용지출이 있게 되어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동일한 토지에 대한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근거한 조사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법령에서의 조사내용과 B법령에 의한 조사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조사내용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불필요한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중복조사의 내용이 개별적인 정보로 구축된 경우에는 정보의 확대 재생산으로 말미암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정보의 신뢰성 부족

조사구축 표준과 세부조사 지침이 없어 전국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긴 주기를 가지고 정보를 갱신함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¹¹⁾

기본적으로 국토에 관한 조사 및 정보구축이 개별 기관별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방법, 시기 및 정보의 구축·관리·갱신에

¹¹⁾ 정동훈, 앞의 논문, 3면.

있어 제각기 다르고,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조 사대상의 선정 및 변경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12)

4) 자료의 최신성과 일관성 부족 및 관리의 문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 총21종 중 12종(57%)이 2년 이상의 갱신주기를 가지고 있어 정보의 최신성 및 상호 시간적 일관 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한편 행정주체나 민간 모두 축적한 공간정 보를 별도의 가공없이 전달하므로 부가가치 창출과 정책지원이 미흡 하다.

5) 정보의 관리 및 유통ㆍ이용활성화 문제

행정주체의 업무시스템 위주로 시작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는 외부전달을 위한 가공 부문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단순 검색·열람·발급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 전달에 그쳐왔고, 그로 인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확보된 정책적 가치창출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왔다.13) 정보의 관리 및 유통·이용활성에 대해서는 '공간정보법'상국가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정보제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관리 기관들은 추후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대부분 공개 및 제공을 꺼리고 있다.14)

6) 대상·지역에 따른 정보의 편중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대부분 부동산·주택·토지·건축·도시개발·토양환경·산지관리·

¹²⁾ 조광제, 앞의 논문, 184~185면.

¹³⁾ 정동훈·김진·한창섭, "국토공간 이용현황 정보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공간정보학회지』 제21권 제5호, 2013, 26면.

¹⁴⁾ 조광제, 앞의 논문, 185면.

경관·수도권정비·택지개발·도시교통·지역균형개발·토지이용규제·산림자원·도시철도 등 지상 관련 규정들이다. 반면, 연안·해양환경·공유수면·어장관리·항만·어촌어항·수산업·해양생명자원등 해양부분과 지하수·하수도 등의 지하관련 규정들은 상당히 적어대상별·지역별 정보가 편중되어 구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5)

3. 공간정보법과 개별법의 관계

개별법상의 공간정보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문제점은 공간정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 별법령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문성의 부족은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공 간정보법 제12조). 둘째, 공간정보법은 조사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경우 기존의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 제22조). 셋째, 정보의 관리 및 유통ㆍ이용활성화의 문제는 공간정 보법상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장을 두어 대응하고 있다 (법 제21조 내지 제2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법과 개별법 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체계 의 검토를 통해 그 관계와 의미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법체계상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법률은 개별법령에 대해서 일반법 적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보충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개별법 령에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다른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우선하게 된다. 개정된 국가공간정 보기본법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법 제4조에서는 '공간정 보의 생산 · 관리 ·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¹⁵⁾ 조광제, 앞의 논문, 185면.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의 조사,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간정보법상의 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및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이고, 통일적인 체계가요구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별법령에 대해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다양한 개별법령에서의 개별적인 공간정보의 수집, 구축 등으로생겨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간정보기본법은 일반적인 '기본법'이라기보다는 공간정보에관한한 망라적이고 기초가 되는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법령이 "기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조사할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하 '활용규정'이라 한다)을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16)

Ⅲ. 궁간정보 법제의 문제점

1. 법체계 상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정보법과 개별법과의 체계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규정(대표적으로 공간정보법 제4조)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공간정보법 제4조와 개별법령상의 활용규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는가는 중요

¹⁶⁾ 대표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13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 이에 따라 공간정보법에 의해 조사 및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문제이다. 즉, 공간정보법은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4조), 개별법령에서는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규정을 두고 있다. 후자의 '다른 법 률'이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공간정보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두 법체계간의 관계는 종래의 일반법(기본법)-특별법의 관계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법원론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 간정보법과 개별법령은 상호보완적 관계 및 순환론적 관계에 있다. 즉, 전자에 있어서 공간정보법에 대해서 개별법령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기도 하지만, 공간정보법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 대 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후자의 의미는 공간정보의 조성, 구축 및 활용은 단일한 행위로 종료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재조성, 재구축 및 재활용되는 측면 에서 나타낸다. 개별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법에 의 해 구축되고, 그 정보의 주된 활용은 다시 개별법령상 필요한 공간정 보로 제공・활용된다.

공간정보법과 개별법령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 공간정보법 제4조는 그 의의를 충분히 다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개별법령에서는 공간정보법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법령이 매우 많다. 즉, 개별법령에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사나 자료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간정보법에 의한 기반조성이나 구축・활용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농지관련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농지정보화사업'은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이나 공간정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상의 농지원부 작성에 관하여 '농지정보화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공간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17) 그밖에도 산림공간정보시스템구축, 국가교통수용조사 등 많은 공간정보의 조사 및 구축에 관한 근거법률들이 공간정보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지 공간정보법상의 '시행계획'의 형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시대 이전의 개별법령보다 공간정보법이 최근에 들어서야 제정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보여 진다. 또한 공간정보법 상의 많은 법개념 및 제도들이 여전히 생성 및 형성과정 중에 있기때문에 명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기가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법에 대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공간정보의 중요성 및 산업적 발전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간정보법과 개별법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법 제4조가 다른 개별법령에 대한 공간정보법의 지위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매우 타당한 입법이다. 다만, 현재 공간정보가 기초적인 정보로서 규정된 개별법령이 130여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법령상의 공간조사 및 정보구축·활용이 공간정보법상의 그것과 상호보완적이고 순환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법령상 활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전국통일적인 표준화를 위해서 활용규정을 기존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조직(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미국이나 일본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내 무부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에서

¹⁷⁾ 국토해양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2013, 61~62면.

전담하고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조정 기관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공간정보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위원회의 구성도 각 부처에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이루지는 것이타당하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법은 각 부의 차관급 및 청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18)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전문가도 포함시키고 있다(법 제5조, 시행령 제3조).19) 이처럼 공간정보법상 공간정보위원회는 그 역할 및 책임에 따른 위상에 걸맞게 그 위원 구성을 하고 있다. 즉,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부처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차관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명하고 있다.

미국의 FGDC나 독일의 GDI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州)의 이익을 대표하여 공간정보의 조사,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 지위에 있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에 반하여 단일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일한 행정부 내의 중앙부처의 차관급 등이 공간정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전히 칸막이식 행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처이기주의에 의한정보의 공유나 책임소재의 회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조율도 필요하지만, 명문의 규정으로

¹⁸⁾ 위원이 되는 자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 행정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및 해 양수산부 차관 및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이다.

¹⁹⁾ 또한 공간정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과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 각 부처의 차관급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임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공간정보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의 조사,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관련된 관 계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종래 민간부문은 공간정보의 수요자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민간이 공간정보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은 공간정보의 단순한 수동적 수요자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의 표준화를 요청하고, 수요에 맞는 기술지원을요구하는 위치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되며, 참여적 · 협력적 관계로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행 공간정보법의 추진체계는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협력적 추진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일반사용자,정부기관, 학교,연구소 및 산업체 등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정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이를 공간정보 조사,구축 및 활용의 추진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2 주제

일본의 지리공간정보

허 대 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I.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 1 의의
- 2 기존 지적제도(지적도)의 한계
- 3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요 지리공간정보
-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 1. 국토공간데이터기반의 정비 및 GIS보급촉진에 관한 장기계획(1996~2002년)
 - 2. GIS Action program 적용기(2002~2008년)
 - 3.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2008~현재)
- Ⅲ.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
 - 1. G공간 X ICT 추진회의
 - 2.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3. 일본 국토지리원
- Ⅳ.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1. 제정배경 및 경위
 - 2. 동법의 개요
 - 3. 기본이념
 - 4.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5. 지리공간정보활용 시책의 추진

I.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1. 정의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

- (1) 공간상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정보
- (2) 위의 정보와 관련된 부대 정보
- 공간상의 특정지점이나 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정보(위치참 조정보, 예 : 지도 등)
- 이와 함께 대장이나 통계 등의 위치 참조 정보에 관련된 정 보도 포함(토지이용도, 지명정보, 대장정보 등)

3

I.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2. 정부대응의 배경

(1) 고베 대지진의 발생

(지진 발생 직후) 피해상황의 파악 (복구작업) 효율적인 잔해철거 등의 문제

(2)국제적 대처의 진전

- 미국 연방 지리정보위원회(FGDC)의 설치 및 국가정보데이터기반(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한 표준화 작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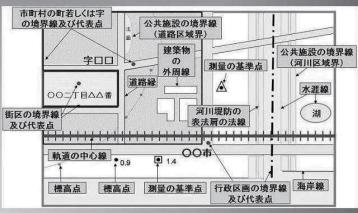
→지리정보시스템(GIS) 관계 부처 연락회의 설치(1995.9.)

→국토공간데이터기반의 정비, 지리정보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시작

4

I.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 지리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이 되는 지도정보로써 다양한 지리공간정보를 결합시켜 기반지도로 활용하거나, 시정촌 등의 다른 통계와 결합하여 그 통계지리정보로 활용 지리정보의 중첩으로 인한 위치적 차이의 해소를 위해 전국에 걸쳐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 외
- 한 정보의 정비와 갱신



I. 지리공간정보의 개념

- 국토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비하여 수치화한 데이터 국토정보(해안선, 하천 등), 정책지역정보(행정구역, 인구집중지역 등), 지역정보(공원, 발정소 등), 교육정보(원도, 항안 등) 등
- 공간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데이터의 설계 등의 규칙을 통해 정부표준으로 자리
- 작성된 지리공간데이터는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국토수치정보 해안선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1. 국토공간데이터기반의 정비 및 GIS보급촉진에 관한 장기계획

(1) 기반형성기(1996~1998)

- 국토공간데이터기반의 정비 및 표준화, 각 부문의 역할분<mark>담을 통한 상호이용의</mark>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확립
- 이를 위해 연락회의에서 표준화를 1998년까지 실시, 디지털화상에 있어서의 GIS의 활용방안 및 정비방향 검토, 데이터를 보유한 부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시험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국토공간데이터기반 업무와 관련한 개인 정보보호제도의 검토 등

(2) 보급기(1999~2002년)

- 데이터의 정비 및 갱신의 내실화
- 각 주체 별 데이터의 정비 및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도모, GIS 및 국토공간데이터 기반의 이용·보급·계발의 실시, 효율적인 갱신시스템과 제도의 확립, 국가 및 관계기관에 의한 민간 등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8)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 2. GIS Action program 적용기(2002~2008)
- (1) GIS Action program 2002-2005(2002년 책정)
- 제1부에서 정책전개방향, 제2부에서 구체적 시책을 기술하는 구조
- GIS를 이용하는 기반환경을 거의 완성하는 것과 정부 각 분야에서 GIS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 이를 위해 공간데이터의 호환방법에 관한 지리공간정보표준의 제정, 수치지도 25000 등의 기반적인 지도데이터 정비, 지리정보의 전자화·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GIS를 이용한 효율적인 행정정보제공서비스의 확대 등 추진
- (2) GIS Action program 2010(2007년 책정)
- 행정효율화 및 고도화, 국민생활 편의성의 향상, 산업 및 서비스의 발전 및 창출, 국토이용, 정비보전 등을 위하여 GIS와 지리공간정보를 활용
- 지리공간정보의 정비와 함께 지리공간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기준 및 규칙의 완성, 산관학 연대체제구축의 지향 등을 강조

19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 3.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2008~현재)
-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측량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추진회의' 에 의해 성립
- 제1부에서 정책전개방향, 제2부에서 시책의 구체적 전개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
- (1) 1차 기본계획(2008~2011년)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의 의의 :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
- 지향해야 할 모습: 지리공간정보 고도활용 사회의 실현을 지향(국민생활의 **안** 전·안심과 편의성 향상 등)
- 국토의 이용, 정비 및 보존추진 등 : 데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토계획의 책정과 방재분야에서의 GIS와 위성측량 활용
- 행정의 효율화 및 고도화 : 기반적 자도 데이터의 공동사용을 통한 대규모 비용 절감 등

100

Ⅱ. 관련 정책 및 시책의 변천

(2) 2차 기본계획(2012~2016년)

- (정책방향) 사회요구에 대응한 지속적인 지리공간정보의 정비와 새로운 활용에 대한 대응, 실용 준천정위성시스템의 정비, 활용 및 해외전개, 지리공간정보사회의 정착,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및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형성에의 공헌
- (관련 시책) GIS에 관한 시책, 위성측량에 관한 시책,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대응의 진전과 심화에 관한 시책, 지리공간정보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 지진 등 재난복구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에 관한 시책

(3) 양 기본계획의 관계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은 정부의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의 지휘 아래 종 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추진에 관한 행동계획(G공간 행동플랜)"으로 정리하여 때 년 점검과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공표
-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수행할 과제로서 기반지도정보를 포함한 지리공간정보의 정비·제공, 지리공간정보의 제공·유통의 촉진, 측량위성 관련 고도의 기반기술확립, 산관학 연대의 강화 등을 제시

101

Ⅲ.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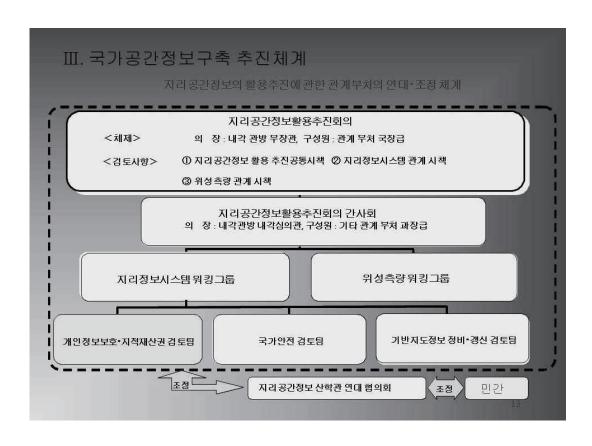
1. G공간 X ICT 추진회의

- 총무성에서 공간정보와 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해 2013년 개최
- 공간정보 오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는 공간정보의 오픈 데이터화나, 공간관련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과 지자체 와 공익사업자 등의 협력모델구축 등
- 세계 최첨단의 공간방재시스템의 구축 : 공간정보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준천정 위성시스템의 메시지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달수단을 활용하여 고도의 방재시 스템의 도입 및 개발 등
- G공간시티(가칭)에 의한 성공모델의 실현: 관계부처와 연대하여 선진적인 G공간 XICT활용모델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 전개

2.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 1995년 지리정보시스템 관계부처 연락회의 → 2005년 측량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추진회의 → 2008년 6월 추진회의를 출범
- 내각관방 부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 간사회가 설치되어 지리정보시스템 워킹그룹과 위성측량 워킹그룹을 지휘.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워킹그룹 아래에는 개인정보보호 · 지적재산권 검토팀, 국가안전 검토팀 기반지도정보정비·갱신 검토팀이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

18



Ⅲ.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 3. 일본 국토지라원 - 일본에서의 실무적으로 측량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다양한 지리공간정보 및 전자국토 Web 등의 이용환경을 정비 - 이를 위해 지리공간정보 및 이용환경의 유지·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전자국토기본도를 유지 및 갱신 - 2011년과 2012년에 "전자국토기본도를 중심으로 한 지리공간정보의 정비·활용 추진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전자국토기본도의 갱신 및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실시

IV.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1995년 고베 대지진 발생 시 피해파악 및 복구를 위해 자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였으나, 동 시 부쳐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정비한 결과 효율적인 이용이 곤란하였다는 반 성에서 정비의 필요성 제기
- 2002년 일본이 세계측지계를 도입하면서 GPS 시스템에 의한 위치좌표와 일본 지도의 위치좌표 의 조정이 필요

(2) 경위

- 2005. 5. 측량·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합동 부회 발족 2006. 6. 의원입법에 의해 기본법안 제출
- 2007. 5. 정기국회에서 성립 및 공포
- 2007. 8. 시행

(3) 체계

- 국가의 기본방침과 각 행정분야의 시책방향을 설정
-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 등, 제3장 기본적 시책으로 구성

Ⅳ.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결한 기반

제 1 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노력, 연대의 강화, 법제상의 조치 등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의 책정 등 제2장

기본계획의 책정 등, 관련행정기관의 협력체제의 정비 등

제3장 기본적시책

총칙 제 1 절

조사연구, 보급계발, 인재육성, 행정의 지리공간정보활용, 개인정보보호등

지리정보시스템 관계 시책 제2절

기반지도정보의 정비,지도관련 업무인 기반지도정보의 상호활용, 기반지도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지리정보시스템관련 연구개발등

제3절 위성측량 관계 시책

위성측량관련 연락조정,위성측량관련 연구개발,기술실증및 이용실증의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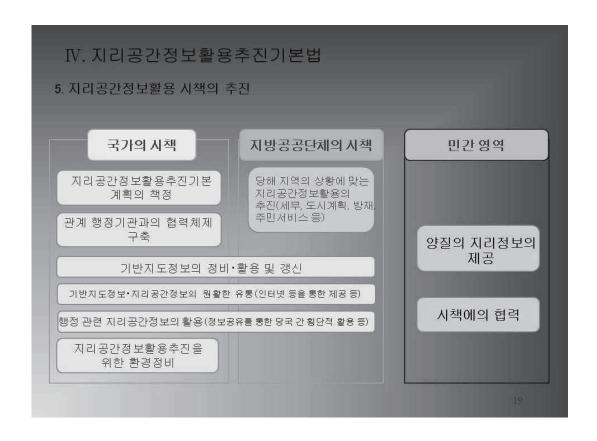
부 칙

IV.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3. 기본이념
- (1) 지리공간정보의 정비·제공, 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성측량의 이용증진, 인재육성 관련기관의 연대강화에 의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의 실시 (국토공간데이터기반(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형성)
- (2) 지리공간정보활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시책의 실시
- (3) 신뢰성 높은 위성측량에 의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의 확보
- (4) 효과적·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 방재대책의 추진 및 국토의 이용·정비· 보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 (5) 행정운영의 효율화 · 고도화
- (6)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 (7) 다양한 사업의 창출 및 발전 및 환경의 조화
- (8) 민간사업자의 기술제안 및 창의 적 노력의 활용
- (9) 개인의 권리이익침해, 국가의 안전확보에 대한 배려

IV.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4.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국가 지방공공단체 O지리공간정보활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할 책무(제4조)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리공간정보활용의 ○정부는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할 책무(제8조) 추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시행할 책무 (제5조) ○연대의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 (제7조) 상호연대 대학 등의 연구기관 관계사업지 ○기본이념에 따라 •양질의 지리공간정보제공 등의 자발적 노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제6조)

37



제 3 주제

독일의 공간정보 법제

임 형 택 (공간정보연구원 박사)

Ⅰ. 개 관

독일의 공간 관련 법제는 크게 유럽연합 지침과 독일 국내법으로 분류하여 고찰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개인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과 개인의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유럽연합에서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95/46 지침(Richtline 95/46/EG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br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1)』을 정하였고,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그 보유한 공간정보를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에서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2007/2 지침(INSPIRE- Richtlinie: Richtlinie 2007/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4. März 2007 zur Schaffung einer Geo-dateninfrastruktur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2)』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은 유럽연합의 지침 내용을 독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전자의 지침 에 따른 『연방정보보호법(GeoZG: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을 제정하였으며, 후자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 공간정보 접 근법(GeoZG: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을 제정하 였다.

¹⁾ 이하 "유럽 정보거래 지침"이라고 약함

²⁾ 이하 "유럽 공간정보인프라 지침"이라고 약함

Ⅱ. 유럽연합 지침

1. 유럽연합에서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2007/2 지침

(1) 입법배경 및 체계

유럽연합은 환경정책, 환경조치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내에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에서 『유럽 공간정보 인프라 지침』을 제정하였다.3)즉,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구하는 환경보호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공간정보를 상호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표준화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상호간에 호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상호 간에 고보유한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 차원의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 차원의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4)이를 위해 『유럽 공간정보 인프라 지침』은 전문, 총칙(제1장), 메타데이터(제2장),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영성(제3장), 네트워크 구축(제4장), 데이터의 공동 사용(제5장), 조정 및 보충조치(제6장)와 보칙(제7장), 그리고 부속서 Ⅰ, Ⅱ와 Ⅲ으로 구성된 규정을 두고 있다.

- (2) 주요 내용
- 1) 총 칙

³⁾ INSPIRE-Richtlinie, Präambel (1), Artikel 1.

⁴⁾ Kummer/Frankenberger(2012), Das deutsche Vermessungs-und Geoinformations- wesen, Wichmann, S.165ff.

(a) 목적(제1조)

유럽 인프라 지침은 유럽공동체적 환경정책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 밖의 정치적 조치나 활동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공간정보 인프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체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구축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 인프라체계를 기초로 한다.

(b)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조)

유럽 인프라 지침은 2003/4/EG 지침5)과 2003/98/EG 지침6)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知的 財産權)의 존속을 침해할 수 없다.

(c) 정의 규정(제3조)

유럽 인프라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i) 공간정보인프라체계(Geodateninfrastruktur)는 메타데이터(Metadaten), 공간정보 데이터 셋(Geodatensätze)와 공간정보 서비스 (Geodatendienste), 네트워크 서비스(Netzdienste)와 기술, 유럽 인프 라 지침과 조화될 수 있는 공동 사용・접근・활용 및 조정과 감 독 메카니즘・과정・절차에 관한 협정 등에 적용되거나 사용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 ii) 공간정보(Geodaten)는 일정한 장소나 지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5) 2003/4/}EG 지침은 환경정보의 공개적 접근과 90/313/EWG 지침의 폐지를 위한 2003/4 지침(RICHTLINIE 2003/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8. Januar 2003 über den Zugang der Öffentlichkeit zu Umweltinformation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0/313/EWG des Rates)을 의미한다.

^{6) 2003/98/}EG 지침은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2003/98 지침(Richtlinie 2003/9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7. November 2003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des öffentlichen Sektors)을 의미한다.

- iii) 공간정보 데이터 셋(Geodatensätze)는 공간정보 중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 iv) 공간정보서비스(Geodatendienste)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간정보 데이트 셋에 포함된 공간정보나 이에 속하는 메타데이터를 가 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v) 공간적 객체(Geo-Objekt)는 일정한 장소나 지형과 관련한 현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추상적 묘사를 의미한다.
- vi) 메타데이터(Metadaten)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서비스 를 기술하고, 이를 조사하거나 목록을 작성·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vii)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ät)은 반복적인 별도의 조작 없이, 그리고 그 결과가 응집적이고 셋과 데이터 서비스의 부수적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그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공간정보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viii) 유럽연합 공간정보인프라구축 공간정보 포털(Geo-Portal INSPIRE) 은 검색서비스, 뷰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변환서비스나 공간 정보 서비스의 불러오기 서비스 등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이와 유사한 구성체계를 말한다.
- ix) 관공서(Behörde)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 공적 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 수준에서 공적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나 그 밖의 사무소,
 - 국내법에 근거해 환경과 관련한 일정한 의무, 활동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공적 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 앞에서 열거한 사무소,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통제를 받으면 서 환경과 관련한 공적 관할권을 가지거나, 공적 임무를 수행하 거나 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법인,

-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그것이 사법상 또는 입법상의 속성 에 속하는 한- 유럽 인프라 지침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나 시설을 관공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 x) 제3자는 관공서 외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d) 적용범위(제4조)

- i) 유럽 인프라 지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권영역에 관련하는 경우.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관공서에 존재하고, 관공서에 의해 생 성·수용·관리 또는 갱신되며, 공적 임무에 부합하는 경우,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나 공간정보 서비 스를 공간정보 포털에 결합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한 제3자에게 존재하는 경우,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부속서 I, Ⅱ나 Ⅲ에서 열거한 테마 중하나 또는 복수와 관련한 경우,
- ii) 상이한 관공서에 동일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다수의 복사본 이 존재하거나 생성되었다면, 유럽 인프라 지침은 상이한 복사 본을 파생한 참조버전(원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iii) 유럽 인프라 지침은 위 i)에서 열거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련한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된다.
- iv) 유럽 인프라 지침은 새로운 공간정보의 집합체에 대해서는 규 정하지 않는다.
- v)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관공서에 존재하고 관공서에 의해 생 성·수용·관리 또는 갱신되며 공적 임무에 부합하는 경우, 또

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나 공간정보 서비스를 공간정보 포털에 결합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한 제3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해당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공서는 유럽 인프라 지침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해당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vi)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부단계의 행정수준에서 활동하는 관공서에 공간정보 데이터 셋이 존재하거나 생성되었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그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집합체나 보급이 규정되어 있다면, 위 i)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럽 인프라 지침이 적용된다.
- vii) 부속서 I, Ⅱ와 Ⅲ에서 열거된 공간정보 테마는 환경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조치를 지원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유럽 인프라 지침 제22조 제3항에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메타데이터
- (a) 메타데이터의 생성 및 언명사항(제5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I과 Ⅲ의 테마에 해당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꾸준히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ii) 메타데이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언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과규정과 함께 공간정보 데이터 셋 과의 상응성,
 -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로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요건 및 경우에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질과 통용성,

-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생성·관리·유지 및 가공을 할 권한이 있는 관공서,
- 제13조에 의한 공개적 접근에 대한 제한과 이러한 제한의 근거.
- 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메타데이터가 제3조 제6호에 기술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질을 확보하도록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 야 한다.
- iv) 상기한 제5조에 대한 시행규칙은 제22조 제2항에서 열거된 규정절차에 따라 2008. 5. 15.까지 발효된다. 이러한 규정절차는 해당 국제 규범과 사용자의 요구, 특히 메타데이터의 유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b) 메타데이터 생성의 시간표(제6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5조에서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다음의 시간계획에 따라 생성하여야 한다.

- i) 부속서 Ⅰ과 Ⅱ에서 열거된 테마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늦어도 시행규칙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2년,
- ii) 부속서 Ⅲ에서 열거된 테마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늦어도 시행규칙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5년.
 - 3)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영성
- (a)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규칙(제7조)
- i) 상호운영성을 위한 기술적 방법과 -그리고 그 시행에 있어서-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조화가 확정될 수 있 는 경우, 그리고 시행규칙에 비본질적인 새로운 규정을 둠으로 써 유럽 인프라 지침의 개정이 야기되는 경우, 시행규칙은 제22

조 제3항에 열거된 규정절차에 따라 발효될 수 있다. 시행규칙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사용자의 요구, 기존의 주도권,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조화를 위한 국제규범, 실행가능성 및 비용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호운영성이나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 상의 조직에의해 확정된 관련 규범은 이러한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관한 기술적 수단이 표시되어야 한다.

- ii) 위 i)에서의 시행규칙은 조사위원회(Kommission)가에서 행한 분석을 기초로 그 실행가능성과 예상되는 비용편익 관계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 분석 결과는 제22조 제1항에서 열거된 전문위원회(Ausschuss)에 전달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분석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를 전달해야한다.
- 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든 새로운 집적된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이에 상응하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 i)에서 거론된 시행규칙의 발효 후 2년 내에 그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활용 가능한 그밖의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 역시 시행규칙의발효 후 7년 내에 그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보증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데이터 셋은 시행규칙에 따라 존재라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적응을 통해 또는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술된 전환포메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⁷⁾ Kommission은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인프라 지침에서는 Kommission 외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Ausschu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인프라 지침에서는 Kommission과 Ausschuss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는 조사위원회라고 번역하고 후자는 전문위원회라고 번역하고 자 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감독이나 조사와 관련한 위원회에 많이 사용되고, 후자는 일정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형태의 위원회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 iv) 위 i)의 의미에서의 시행규칙은 부속서 I, Ⅱ 또는 Ⅲ에서 열 거한 테마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 셋을 위해 중요한 공간정 보 대상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이러한 공간정보의 공간정보 참 조를 포함하다.
- v)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지방의 대표 또는 그 밖에 사용자, 제작자, 다양한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협력체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역할을 근거로 공간정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위 제22조 제1항에서 기술한 전문위원회에서 자문하기 이전에 위 i)에서 기술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다.
- (b)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관한 시행규칙의 요건(제8조)
- i) 부속서 I, Ⅱ 또는 Ⅲ의 하나 또는 다수의 테마와 관련한 공간 정보 데이터 셋의 경우에 제7조 제1항에서 예정된 시행규칙은 이하의 ii), iii)과 iv)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i) 시행규칙은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의 시스템으로부터 동일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정보 대상에 대해 통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
 - 공간정보 객체 간의 관련성,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속성과 이에 상응하는 다국 언어에 대한 사전,
 - 정보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정보,
 - 정보의 갱신.
- iii)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정보항목 간이나 다른 척도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객체인 정보항목 간의 일관성을 위해 이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해야 한다.

- iv) 상이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으로부터 파생된 정보가 제7조 제4 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과 동일시 될 수 있도록 시 행규칙을 정해야 한다.
- (c)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간표(제9조)

제7조 제1항에서 기술된 시행규칙은 다음의 시간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 부속서 I에서 열거된 테마와 관련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9.5.15.까지,
- 부속서 Ⅱ나 Ⅲ에서 열거된 테마와 관련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2.5.15.까지.
- (d) 상호 운영성을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위무(제10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데이터, 코드와 기술적 유형 등을 포함한 제 7조 제1항에서의 시행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관련 정보를 이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할 필요 없이- 관공서 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i) 그 위치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져 있는 지형 객체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회원국은 그 공통 객체의 묘사와 위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4) 네트워크 구축
- (a) 네트워크의 구축 범위(제11조)
- i) 유럽연합은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유럽 인프라 지침에 따라 메 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해당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기초로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 정보세비스를 식별하고 메터데이터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

- 묘사할 수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을 게시하고, 내비게이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위치를 변화하며 오버레이할 수 있고, 또한 메타데이터중의 핵심 정보와 그 밖에 중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뷰 서비스,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전부나 일부를 다운로드하거나 실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전부나 일부의 복사본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
-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 셋을 뷰로 변환할 수 있는 전환서비스
- 공간정보서비스를 불러오기 위한 서비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사용하기에 간단하고,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 ii) 위 i)의 검색서비스의 목적을 위해 검색기준에는 적어도 다음 의 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키워드
 -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유형
 - 공간정보 데이터 셋의 질과 유효성
 -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행규칙과의 일치성 수준
 - 지형적 위치
 -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건
 -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생성·관리·유지하고 가공하는 소관청
- iii) 위 i)의 전환서비스는 위 i)에 열거된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체 서비스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수 있다.

(b)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조(제12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관공서가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12조 제1항에 기술된 네트워크에 링크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특히 메타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와 상호운영성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도 그 신청을 받아 제공되어야 한다.

- (c)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한(제13조)
- i) 제11조 제1항과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제관계, 공적 안전 또는 국제방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기술한 서비스에 관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로의 공공연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 제1항과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은 그 접근이 다음의 사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기술한 서비스에 관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로의 공공연한 접근 및 제14조 제3항에 기술한 전자거래 서비스로의 공공연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법으로 정한 관공서의 절차적 비밀,
 - 국제 관계, 공적 안정이나 주 방위,
 - 법정 절차,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형사적 조사나 규율 과 같은 종류를 담당하는 관공서,
 - 국가적 비밀과 조세 비밀의 준수를 포함한 정당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이나 공동체법이 정하고 있는 경 우, 상공업 상의 정보에 대한 비밀,
 - 지적 재산권,
 -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 국내법이나 공동 체법에서 그 비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한, 자연인에 관한 개

인적 데이터나 파일의 비밀,

- 개인이 관련 정보의 인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적 의무도 없는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임의로 제공되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보호
- 예컨대 희귀동물의 거주지와 같이, 환경영역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 ii) 위 i)에 따른 접근 제한의 근거는 매우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개별적 사안의 경우에는 접근의 허락에 대한 공적 이익이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공개에 따르는 공적 이익과 제한의 유지 또는 접근에 대한 부대조건에 따르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13조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와 제8호의 근거 없이 환경 침해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프레임과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위해 95/46/EG 지침8)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 (d)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정보 사용 요금(제14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기술된 서비스 를 공공연하게 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i) 제14조 제1항과는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가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이에 상응하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정비하려는 경우, 특히 빅데 이터를 빈번히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를 위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8) 95/46/}EG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95/46 지침(Richtline 95/46/EG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br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을 의미하다.

- iii)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동될 수 있다.
- iv) 관공서가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나 제5호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은 전자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책, 전자 클릭 라이센스 또는 필요한 경우 라이센스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e) 공간정보 포털(제15조)
- i) 조사위원회는 공간정보 포털 INSPIRE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ii)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15조 제1항에 기술된 공간정보 포털 INSPIRE를 통해 제11조 제1항에 기술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 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f)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비본질적 규정의 개정(제16조)

본 장인 4) 네트워크의 구축에서의 비본질적 규정을 개정하는 시행 규칙은 제22조 제3에 기술된 규정절차에 따라 발표되며, 이 경우에 특히 다음의 사항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 유럽 공동체의 환경법 상의 보고의무와 권고, 존재하는 전자거래 및 기술진보 등을 고려한 전자 제11조와 제12조에 기술된 서비스를 위 한 기술적 명세서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
- 제12조에 기술된 의무.
 - 5) 데이터의 공동사용
- (a) 데이터의 공동이용을 위한 조치(제17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조 제9호 가목과 나목에 기술된 관공서 를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당 관공서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 데이 터 셋과 데이터 서비스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 ii) 위 i)에 따른 조치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공동사용을 위한 시점에 발생하는 실무적 장애와 같은 모든 제 한을 방지하여야 한다.
- 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가 이를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의 관공서나 조직과 시설에 라이센스를 수여하고/ 수여하거나 이들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라이센스의 부여와 요금의 징수는 관공서 간에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간편히 교환한다는 일반적 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요금은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질과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용산정에 있어서는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자기금융 요구에 따른 연간 이자 수익을 추가한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 공동체의 조직과 시설에 유럽 공동체 환경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 iv) 제17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 간정보 서비스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제3조 제9호 가목과 나목에서 기술된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 조직과 시설의 관 공서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한 이 에 적용되지 않는다.
- v) 제17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 간정보 서비스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은 상호성과 등가치성

의 원칙에 기초해 국제협약을 통해 설립된 시설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한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 vi) 제17조 제4항과 제5항에 부합하는 제17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은 국내법을 근거로 그 이용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vii) 제17조와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동이용으로 인해 정의실 현, 공공의 안전, 주 방위나 국계관계를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v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공동체의 조직과 시설이 조화의 요건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의 확정을 위한 시행규칙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정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 시행규칙은 제17조 제1항에서 기술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조정 및 보충조치
- (a) 공간정보 인프라 체계에 적합한 체계와 메커니즘의 형성을 위한 조정(제18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간정보 인프라체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의 기여를 다양한 행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적합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특히 사용자, 제작자, 다양한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협력체 등에 의한 중요한 데이터 셋과 사용자의 수요에 대한 묘사, 존재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유럽 인프라 지침의 이행에 대한 피드백등과 같은 기여를 조정하여야 한다.

- (b) 조사위원회와 교섭기관(제19조)
- i) 조사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수준에서 유럽 공간정보 인프라체계 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

ii)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인프라 지침과 관련한 교섭을 위한 교섭기관을 -일반적으로는 관공서- 지정하여야 한다.

(c) 표준화(제20조)

유럽 인프라 지침에서 정한 시행규칙은 적절한 방법으로 98/34/EG 지침9)의 절차에 따른 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정한 표준과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보 칙

- (a)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감독의무와 보고서의 제출의무(제21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이용을 감독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그 감독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공 하고 이를 장기간 공개해야 한다.
- ii) 유럽연합 회원국은 늦어도 2010.5.15.까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포함한 보고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 데이터 셋과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한 공적 제공자, 사용자와 중개자 사이의 조정, 제3자와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관계.
 - 공간정보 인프라체계의 운영과 조정에 대한 관공서나 제3자의 기여
 - 공간정보 인프라체계의 이용에 관한 정보
 - 관공서를 통한 데이트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
 - 유럽 인프라 지침 이행의 비용과 편익

^{9) 98/34/}EG는 표준화와 기술적 규정 영역 및 정보사회를 위한 규정에 대한 정보절 차에 관한 98/34/EG(Richtlinie 98/3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 Juni 1998 über ein Informationsverfahren auf dem Gebiet der Normen und technischen Vorschriften und der Vorschriften für die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1] [2])를 의미한다.

- iii) 유럽연합 회원국은 늦어도 2013.5.15.까지 최초로, 그리고 이후로는 3년마다 위 ii)의 사항이 기술된 최신 보고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v) 제21조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칙은 제22조 제2항에 기술된 규정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 (b) 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원조(제22조)
- i) 전문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원조한다.
- ii) 위 i)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1999/468/EG 의결¹⁰) 제8조를 준수하면서 1999/468/EG 의결 제5조와 제7조가 준용된다. 1999/468/EG
 의결 제5조 제6항에 따른 시간은 3개월로 확정된다.
- iii) 위 i)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1999/468/EG 의결 제8조를 준수하면서 1999/468/EG 의결 제5a조 제1항부터 제5항이 준용된다.
- (c)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의무(제23조)

조사위원회는 늦어도 2014.5.15.까지, 그리고 이후로는 매 6개월마다 특히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고서에 기초 한 유럽 인프라 지침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유럽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보고서에는 유럽공동체의 조치에 관한 제안을 첨부할 수 있다.

- (d)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럽 인프라 지침의 수용 방법(제24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2009.5.15. 이전에 유럽 인프라 지침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권리규정과 관리규정을 정한다. 유럽연합 회

^{10) 1999/468/}EG는 의결조사위원회에 위임된 시행권한의 행사를 위한 방법의 확정에 관한 1999.6.28.의 유럽연합 상원의 의결(.Beschluss des Rates vom 28. Juni 1999 zur Festlegung der Modalitäten für die Ausübung der der Kommission übertragenen Durchführungsbefugnisse)을 의미한다.

원국이 이러한 규정을 발효하면, 해당 회원국은 그 규정 자체로 또는 그 규정의 공고에 대한 지시를 통해 유럽 인프라 지침과 관련된다.

ii) 유럽연합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이 유럽 인프라 지침에 따라 공 포한 중요 국내법의 원문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 시행일(제25조)

유럽 인프라 지침은 유럽연합 공문서의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f) 지침의 대상 범위(제26조)

유럽 인프라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3) 부속서

- 1) 부속서 I(제6조 가목, 제8조 제1항과 제9조 가목에 의한 공간 정보 테마)
- ① 좌표참조체계 : 측지적 수평과 수직 데이터를 기초로 좌표 셋 (x,y,z)과/또는 넓이, 길이와 높이로 구성되는 공간정보(지리 데이터)의 공간적 참조를 위한 체계.
- ② 지형 격자 시스템 : 격자 공간의 공동 시원점과 표준화된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한 다양한 해상도로 된 조화로운 격자 시스템.
- ③ 지형 명칭 : 지역, 지방, 위치, 대도시, 변두리, 소도시나 거주지의 명칭 및 공적이나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지리적·지형적 특징.
- ④ 행정단위: 유럽연합 회원국이 고권을 가지고/ 가지거나 행사하고 행정관할을 통해 분리되는 경계를 이루는 영역인 지역, 지방과 국가의 행정단위.

- ⑤ 주소 : 일반적으로 도로명, 건물명과 우편번호로 구성된 주소에 의한 토지의 위치.
- ⑥ 필지 : 등기부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징표에 의한 영역.
- ② 교통망: 도로, 철도, 항공 및 수로 등의 교통망과 이에 부속된 인프라 시설. 또한 다양한 결합을 통한 이용을 포함하며, 1996.7.23. 유럽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체 가이드라인에 관 한 유럽의회와 유럽상원의 1692/96/EG 결정과 그 개정판에서 의미하는 유럽 교통망을 포함함.
- ⑧ 해양망 : 바다영역과 그 밖의 모든 수(水)공간 및 이와 결합된 하상과 하부 분지를 포함한 해양망의 구성요소.
- ⑨ 보호영역: 구체적인 보호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법, 유럽공 동체법과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법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영역.

2) 부속서 Ⅱ

- ① 높이 : 토지, 빙해와 해양에 대한 디지털 해발 높이 모델. 여기에 는 육지의 해발모델, 수심측량과 해안선이 포함됨.
- ② 토지피복 : 인공표면, 농경, 산림, 습지와 해양 등을 포함한 지표 의 물리적·생물학적 피복.
- ③ 정사영법 : 위성센서나 항공기센서에 의한 지표의 지리 참조 이미지 데이터.
- ④ 지질: 구성요소와 체계에 따른 지질학적 특징. 기반암, 대수층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과 지형학을 포함함.

3) 부속서 Ⅲ

- ① 통계단위 : 통계데이터의 활용이나 사용을 위한 구성단위.
- ② 건물 : 건물의 지형적 위치.

- ③ 토지: 깊이, 토양, 토지입자와 유기물의 구조와 성분 및 석력(石力), 부식, 경우에 따라 평균 경사와 수분저장능력 등에 대한 토지와 지하토지의 특징.
- ④ 지목: 당시 또는 미래의 계획된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적(예컨대 거주지, 상공업지, 농경 임야지, 자유지 등)에 따른 지역의 특징.
- ⑤ 보건과 안전: 병리 상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형 분할(알레르기, 암질병, 대기 관련 질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생물지표, 토양비옥도의 감소, 전염병 등), 또는 환경과 직접적(대기오염, 화학약품, 오존층의 감소, 소음 등)·간접적(식량, 유전적 변이 조직 등) 관련이 있는 인간의 웰빙(피로, 스트레스 등).
- ⑥ 공익사업과 국가서비스 : 하수와 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공적 부조 시설, 상수도 공급과 같은 공익시설; 공적 행정, 재난방지, 학교와 병원 등과 같은 국가적 관리 및 사회서비스.
- ⑦ 환경감독 : 관공서 자체 또는 관공서의 위탁을 통한 유해물질,환경 매개체의 상태와 그 밖에 생태계의 매개변수(파라미터) 등을 포함한 환경감독시설의 위치와 운영.
- ⑧ 제조업 시설물 : 환경오염의 통합적 방지와 감사에 관한 1996.9.24. 유럽의회 상원의 96/61/EG 지침을 통한 공업 시설물, 물 추출 시설, 광산과 저장소 등의 위치.
- ⑨ 농업 시설물 : 농경 시설과 농산물 저장소(관개시스템, 온실과 축사 포함).
- ① 주민의 분포 인구 통계 : 격자(바둑판 모양), 지역, 행정단위나 그 밖의 분석 단위에 따른 주민의 특징과 활동 수준을 포함한 주민의 지리적 분포.
- ① 경영영역, 보호(제한)영역 및 규율 영역과 보도 단위 : 국제적· 유럽공동체적·국가적·지방적 그리고 지역적 단위의 경제적· 법률적 또는 보고를 위한 영역. 여기에는 쓰레기 하치장, 상수원

보호영역, 질산염에 취약한 지역, 규율되는 바다나 큰 내수의 수로, 폐기물 투기 지역, 소음 보호 지역, 탐광과 채광을 허락하는지역, 강의 유역, 중요한 보도 단위와 해변 관리 지역.

- ② 재난지역: 재난(해당 지역의 위치, 강도와 빈도로 인한 잠재적으로 그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대기, 물의순환, 지진, 화산과 화재 등)에 따라 등급화 된 취약지역.
- ③ 대기조건 : 대기의 물리적 조건. 여기에는 측량, 모델이나 또는 양자의 결합에 기초한 공간정보와 측량지역이 포함됨.
- ④ 기상 지리적 특징 : 기상조건과 이에 대한 측량; 강수량, 기온, 증발산(蒸發散), 풍속과 풍향.
- ⑤ 해양 지리적 특징 : 해양의 물리적 조건(해류관계, 염도, 파고 등).
- (b) 바다영역 : 공통적 특징과 함께 영역이나 부분 영역으로 분할한 바다와 염해의 물리적 조건.
- ① 생물 지형적 영역 : 공통적 특징과 함께 상대적인 동종 생태계의 조건.
- (® 서식지와 생활권: 유기체를 위한 물리적 기초로서 특정 생태 조건, 프로세스, 구조와 (삶을 지탱하는) 기능에 따른 지형 영역. 여기에는 지리적, 무생물적, 그리고 생물적 특징을 통한 자연적, 반자역적 지상영역과 수중영역을 포함함.
- ① 종의 분포 : 격자, 지역, 행정단위 및 그 밖의 분석 단위에 따른 동물과 식물이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
- ② 에너지 자원 : 탄화수소, 수력,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자원의 (규모) 범위를 위한 깊이 값과 높이 값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② 광물 자원 : 금속 광석, 산업 자원 등을 포함한 광물 자원. 경우에 따라서는 광물 자원의 (규모) 범위를 위한 깊이 값과 높이 값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유럽연합에서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95/46
 지침

(1) 입법목적 및 체계

『유럽 정보거래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사적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유럽 정보거래 지침』 제1조 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럽 정보거래 지침 제1조 제2항은 이러한 자연인의 정보보호를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개인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거나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정보거래 지침』은 전문, 총칙 (제1장), 개인 관련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위한 일반조건(제2장), 법적 구제방법과 책임 및 벌칙(제3장), 유럽연합 외의 제3국으로의 개인 관련 정보의 양도(제4장), 유보규정(제5장), 개인 관련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관할기관 및 조직(제6장), 유럽연합에서 지침의 실현을 위한 조치(제7장)와 보칙(제8장)을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유럽 정보거래 지침』의 총칙과 개인 관련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위한 일반조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¹¹⁾ 여기서 개인 관련 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특정 또는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특히 인식번호(주민등록번호)나 하나 또는 다수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동일성이 있는 특정 요소의 분류를 통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유럽 정보거래 지침』제2조 a) 참조).

¹²⁾ Kummer/Frankenberger(2012), aaO. S.171ff.

(2) 주요내용

1) 총 칙

총칙에서는 전술한 『유럽 정보거래 지침』의 입법 목적(제1조) 외에 정의규정(제2조), 적용영역(제3조)과 개별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제4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정의규정에서는 다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제2조).

- i) 개인 관련 데이터: 특정 자연인이나 특정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ii)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란 전자 처리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 수행하는 절차나 일련의 절차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개인관련데이터의 수집, 저장, 구성, 보존, 수정이나 변화, 검색, 참조, 사용, 전송을 통한 확산, 유포나 그 밖에 다른 형태로의 조달, 정렬이나 조합, 차단, 삭제나 파괴 등과 같은 모든 활동이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 iii) 개인 관련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개인 관련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구조적 집합체를 의미한다.
- iv) 처리 책임자: 책임 처리자란 단독이나 또는 공동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관공서, 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관련 데이터에 대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개별 국내법이나 또는 유럽공동체법규와 행정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처리 책임자가 되는 특별한 기준이나 그 명칭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개별 국내법이나 또는 유럽공동체법규와 행정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v) 처리 수탁인: 처리 수탁인이란 처리 책임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인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관공서, 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을 의미한다.
- vi) 제3자: 제3자는 정보 주체, 처리 책임자, 처리 수탁인 또는 처리 책임자나 처리 수탁인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그 데이터를 처리 하는 자 이 외의 자연인, 법인, 관공서, 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 을 말한다.
- vii) 수령자: 수령자는 개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자연인, 법인, 관 공서, 시설이나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수령자는 제3자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위탁연구를 위해 개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는 수령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 viii)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 주체의 동의란 강압 없이 구체적 상황 과 사정을 인식하고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의 표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럽 정보거래 지침』은 개인 관련 데이터의 전부나 일부분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및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어야 할 개인 관련 데이터의 비자동적 처리의 경우에 적용된다(제3조). 다만 『유럽 정보거래 지침』은 다음과 같은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유럽공동체법의 적용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 예컨대 『유럽연합에 관한 협약』 제5장과 제6장에 따른 활동과 공적 안전, 주 방위, (경제적 복지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국가의 안전과 형사상의 국가 활동 등과 관련한 처리,
- ii) 단지 개인적, 또는 가족적인 활동을 위한 자연인의 행위.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정보거래 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적용을 위해 선포한 규정을 다음과 같은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에 적용하여야 한다(제4조).

- i) 처리 책임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행하는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 활동,
- ii) 처리 책임자가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는 않지만 국제 공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행하는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 활동,
- iii) 처리 책임자가 유럽공동체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관련 회원국의 주권에 속하는 전자적·비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하는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 활동.
 - 2) 개인 관련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위한 일반조건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하의 조치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제5조).

a) 데이터의 질에 관한 원칙(제6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개인 관련 데이터에 관하여 다음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i) 신의와 성실에 따라, 그리고 적법한 방법에 따라 개인 관련 정보가 처리될 것,
- ii) 명확하고 적법한 목적을 정하고, 목적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재가공 되지 않은 것.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적절한 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한, 역사적, 통계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데이터가 재처리되는 것은 여기서의 목적규정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iii) 개인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재가공 되는 목적에 상당히 상 응할 것.
- iv) 물적으로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의 상태일 것. 개인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재가공 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적당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는 삭제되거나 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v) 개인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재가공 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보다 장기여서는 안 되며, 정보 주체의 동일 성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함. 유럽연합 회원국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해 예정된 기간 보다 장기로 보관되어야 할 개인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증에 관해 규정해야 함. 또한 처리 책임자 역시 위 i) ~ v)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b) 데이터 처리의 허용에 관한 원칙(제7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음의 요건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충족된 경우에 한해 개인 관련 정보의 처리가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i) 정보 주체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
- ii) 계약의 상대방이 정보의 주체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정보 주체의 요청을 받아 계약의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iii) 처리 책임자가 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데이터의 처리 가 필요한 경우.
- iv) 정보 주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v) 공익이 있거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처리 책임자나 데이터를 인도 받은 제3자에게 그 임무가 부

여되어 있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vi)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과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처리 책임자나 또는 데이터를 인도 받은 제3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c) 정보처리의 특별 유형
- i) 특별한 유형의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제8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민족적·인종적 혈통, 정치적 사고, 종교나 철학적 확신, 노동조합의 소속 여부, 및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를 금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①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위에 열거된 데이터의 처리에 동의한 경우,
- ② 적절한 보증이 규정되어 있는 개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한, 노 동법에서 처리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로 인정하는 데이터의 처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의 신체적 또는 법적 근거로 그 개인이 동의할 수 없는 한,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의 처 리가 필요한 경우,
- ④ 데이터의 처리가 합법적 활동의 법위 내에서 산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적 목적의 재단, 사단이나 그 밖의 조직을 통해 적절한 보증의 근거 위에서 행해졌으며, 위에 열거된 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조직의 활동목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와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데이터가 제3자에게 인도되지 않는다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⑤ 정보 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제3자와 관련해 데이터를 처리하였 거나 또는 소송법적 청구권의 주장, 행사나 항변을 위해 데이터 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한 보건,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 또는 보건행정의 목적을 위해 민족적·인종적 혈통, 정치적 사고, 종교나 철학적 확신, 노동조합의 소속 여부, 및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며, 개별 국내법에 따라 직업상의 비밀 준수의무를 지고 있는 의료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비밀 준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증을 유보하면서 국내법령이나 관할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예외를 정할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벌, 형사 판결이나 안전규정과 관련한 데이터는 적절한 보증과 함께 단지 관공서의 감독이나 국내법에 근거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유럽연합 회원국은 적절한 보증과 함께 국내법에 근거한 예외를 규정할수 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은 단지 관공서의 감독 하에서만 등록될수 있으며, 행정벌이나 민사 판결과 관련한 데이터 역시 관공서의 감독 하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ii)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와 사상의 자유(제9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단지 저널, 예술이나 문학적 목적에서 추구하는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 제2장인 개인 관련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위한 일반조건, 제4장인 유럽연합 외의 제3국으로의 개인 관련 정보의 양도와, 제6장인 개인 관련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보호를 위한 관할기관 및 조직에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 경우에도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사적 영역의 권리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데이터의 처리가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d) 정보 주체의 정보
- i)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 있어서의 정보(제10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수집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주체가 처리책임자 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책임 처리인의 신원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리인의 신원
- 해당 데이터의 처리의 목적
- 그 밖의 정보(예컨대 데이터의 수령자나 수령자의 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무인지 또는 임의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지연된 답변에 따른 효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안내 및 정정권 등)

다만 이러한 정보의 고지는 데이터가 수집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그 데이터의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ii)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정보(제11조)

개인 관련 데이터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된 것이 아닌 경우, 유럽 연합 회원국은 해당 데이터의 저장의 시점이나 또는 제3자에게로 데 이터가 전달된 경우에는 처리 책임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첫 전달 시점에 정보 주체가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한다.

- 처리 책임자의 신원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리인의 신원,
- 해당 데이터의 처리의 목적,
- 그 밖의 정보(예컨대 처리된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수령자나 수령자의 유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안내 및 정정권 등)

다만 이러한 정보의 고지는 데이터가 수집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그 데이터의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또한 특히 통계, 역사나 학문적 탐구를 위해 해당 데이터를 처리한 경우, 위 정보의 고지를 위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법에서 해당 데이터의 저장이나 전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유럽연합 회원국은 적절한 보증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e) 권리 주체의 통지권(제12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든 정보 주체에게 처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i) 자유롭고 방해를 받지 않으며 과도한 지연 없이 적절한 기간 내에 또는 과다한 비용 없이,
 -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가 있었다는 확인, 해당 데이터의 처리 목적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대상인 데이터의 유형, 해당 데이터가 양도된 수령자나 수령자의 유형,
 - 처리 대상인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형태의 통지 및 해당 데이터의 출처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
 - 관련 데이터의 자동 처리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안내.
- ii) 특히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유럽 정보거래 지침』의 규정에 반하여 처리된 데이터의 정정, 해소, 차단.
- iii)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달된 데이터 를 수령한 제3자에 대해 처리된 데이터의 정정, 해소 또는 차단의 보장.

f) 예외와 제한(제13조)

- i)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와 제21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국가의 안전,
 - 국토의 방위,
 - 공적 안정,
 - 범죄행위의 방지, 조사, 확정과 소추, 또는 일정한 규제가 있는 직업의 경우에 직능상의 규정에 대한 위반
 - 통화, 예산과 조세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유럽연합의 중요한 경제적·재정적 이익,
 - 일정한 기간 동안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통제·감독과 질서 기능,
 - 정보 주체의 보호 및 제3자의 권리와 자유.
- ii) 해당 데이터가 단지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통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보관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법적 보장을 유보하면서 일정한 자에 대해 데이터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나 결정이 내려 졌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권리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한해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g) 정보 주체의 반론권
- i) 정보 주체의 반론권(제14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정보 주체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 최소한 제7조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발행한 근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 가 처리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개별 국내법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한편 정당한 반론이 있는 경우에 처리 책임자는 더 이상 해당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

- 해당 데이터를 직접적인 광고의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직접적인 광고의 목적으로 개인 관련 데이터를 제3자에게 처음으로 인도하였거나 제3자의 위탁을 받아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에 처리책임자에 대해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에는 이러한해당 데이터의 인도나 사용에 대해 무료로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 ii) 자동화된 개별 결정(제15조)
-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든 자에게 자동화된 데이터의 처리에 따라 예컨대 정보 주체의 직무능력, 신용평가, 신뢰성이나 행동 등과 같은 개인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공표되는 법적 결과 가 초래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유럽 정보보호 지침』의 규정과 관계없이 개인이 위에서의 결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의 범위에서, 그리고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대한 정보 주체의 청구의 범위에서 허용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
- ②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경우.
- h) 처리의 신뢰성과 확실성
- i) 처리의 신뢰성(제16조)

처리 책임자나 처리 수탁인에 종속해 개인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는 자 및 처리 수탁인은 개인 관련 데이터를 오직 처리 책임자의 지시에 쫓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처리의 확실성(제17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처리 책임자가 개인 관련 데이터의 우연한 또는 불법한 파괴, 우연한 분실, 부적당한 변화나 인도, 또는 부적당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적당한 처리의 그 밖의 형태에 대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i) 통 지

i) 관할 기관에 통지할 의무(제18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나 일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다수의 처리를 실현하기 전에 처리 책임자나 경 우에 따라서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관할 기관에 이를 통지할 것을 규 정하여야 한다.

ii) 통지할 내용(제19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통지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 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처리 책임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처리의 목적.
- 정보 주체의 유형과 관련 데이터나 데이터의 유형에 관한 기술,
- 데이터가 전달될 수령자나 수령자의 유형,
- 제3국으로의 데이터 양도 계획
- 일정한 조치가 제17조에 따른 처리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기술.

iii) 사전 통제(제20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어떠한 처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특별 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iv) 처리의 공연성(제21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처리의 공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독일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

1.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

(1) 구 성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은 『유럽 공간정보 인프라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독일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은 제1절인 목적과 적용영역 (Ziel und Anwendungsbereich), 제2절인 개념규정(Begriffsbestimmungen), 제3절인 요구사항(Anforderungen), 제4절인 전자 네트워크(Elektronisches Netzwerk), 제5절인 공간정보의 활용(Nutzung von Geodaten)과 제6절인 보칙(Schlussbestimmungen)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2) 목적과 적용범위

1) 목적(제1조)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은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첫째 공간정보 보유기관의 공간정보 데이터, 공간정보 서비스와 메타데이터로의 접근, 둘째 공간정보 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용,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법적 범위를 형성한다.

2) 적용영역(제2조)

- i) 이 법은 연방의 공간정보 보유기관과 연방 산하의 공법인에게 적용된다.
- ii) 자연인과 사법상의 법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포털에 관한 공간정보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요건을 구비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iii) 이 법은 공간정보에 관한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iv) 이 법은 1982. 12. 10. 국제연합의 해양권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도 적용된다.

(3) 개념 규정

1) 일반 개념(제3조)

- (a) 공간정보(Geodaten)는 일정한 장소나 지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b) 메타데이터(Metadaten)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서비스를 기술하고, 이를 조사하거나 목록을 작성·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c) 공간정보서비스(Geodatendienste)는 공간정보와 메타데이터가 구조적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구체적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 i)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서비스에 따른 메타데이터에 기초해 검색하고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나타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Suchdienste),
 - ii) 묘사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게시하고, 내비게이하고, 확대하거 나 축소하고, 위치를 변화하며 오버레이할 수 있고, 또한 메타

데이터중의 핵심 정보와 그 밖에 중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뷰 서비스(Darstellungsdienste)

- iii)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간 정보의 복사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 (Downloaddienste),
- iv)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서스비 (Transformationsdienste).
- (d)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ät)은 데이터의 결합가능성, 또는 공통 표준을 준수하여 상이한 시스템과 기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e) 공간정보 포털(Geoportal)은 공간정보 서비스와 그 밖의 넷 서비 스를 통해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소통· 전환과 상 호작용적 플랫폼을 말한다.
- (e) 넷 서비스(Netzdienste)는 소통 · 전환과 상호작용을 위한 넷 기 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f)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공간정보 보유기관은 2004. 12. 22.의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정보의무기관을 말한다.
 - 2) 관련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서비스(제4조)
- (a) 이 법은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 적용된다.
 - i) 공간정보가 독일 연방의 주권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해양권 협약에 따라 독일 연장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되어 있다.
 - ii) 공간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
 - iii) 공간정보가 다음의 자에게 존재한다.

- 공간정보 보유기관: 공적 위탁에 따라, 그리고 해당 기관이 공 간정보 보유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이들 기관의 하나로 참여 하거나, 또는 공간정보 보유기관에 의해 관리되거나 현실화되는 경우를 포함함.
- 제3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체계와의 관련 성이 보장되거나 공간정보를 조달하는 제3자.
- iv) 공간정보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테마와 관련되어야 한다.
- 좌표참조체계, 지형 격자 시스템, 지형 명칭, 행정단위, 주소, 필지, 교통망, 해양망, 보호영역, 높이, 토지피복, 정사영법, 지질, 통계단위, 건물, 토지, 지목, 보건과 안전, 공익사업과 국가서비스, 환경감독, 제조업 시설물, 농업 시설물, 주민의 분포, 경영영역, 재난지역, 대기조건, 기상 지리적 특징, 해양 지리적 특징, 바다영역, 생물 지형적 영역, 서식지와 생활권, 종의 분포,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 (b) 이들 데마에 속하는 공간정보의 상세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통해 규율된다.
- (c) 하나의 참조버전 외에 동일한 공간정보에 대한 다수의 동일한 복사본이 상이한 공간정보 보유기관에 존재한다면 이 법은 단 지 복사본이 유래한 참조버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d) 공간정보 보유기관이 해당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서비스에 관한 지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지적 소유권은 이 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4) 요구 조건

- 1) 공간정보의 제공(제5조)
- (a) 공적 지적 데이터, 공적 지형 데이터와 공적 공간 관련 데이터 는 국가 공간정보인프라체계의 비전문적(fachneutral) 핵심 구성

요소이다. 이들 데이터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연방과 각 주의 관할 기관을 통해 조달된다.

- (b)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는 국가 공간정보인프라체계 의 기본데이터의 구성요소이다. 이들은 해당 요소의 관할기관을 통해 조달된다.
- (c) 공간정보 보유기관은 위(a)에 따른 데이터의 기초 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d) 공간정보가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장소나 지형과 관련되어 있다면, 소관 공간정보 보유기관은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관할기관들과 함께 그 장소나 지형의 위치와 범례를 정하여야 한다.
 - 2) 공간정보 서비스와 넷 서비스의 제공(제6조)
- (a) 공간정보 보유기관은 해당 기관에 의해 수집, 운영 또는 조달된 공간정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최소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 검색서비스, ii) 뷰서비스, iii) 다운로드서비스, iv) 전환서비스,
 - v) 전자거래의 처리를 위한 서비스
- (b) 위 (a)에서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자 넷망을 통해 공공연히 처리되어야 한다.
- (c) 전환서비스는 위 (a)에서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공간정보 서비스와 넷 서비스가 이 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다.
- (d) 검색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 i) 키 워드,
 - ii) 공간정보 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종류,
 - iii) 지리적 위치,
 - iv) 질적 징표,

- v) 공간정보 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로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조건
- vi) 공간정보 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수집, 운영 또는 조달에 관한 소관 보유기관
- (e) 공간정보 서비스와 넷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14조의 규 정을 통해 규율된다.
 - 3) 메타데이터의 제공(제7조)
- (a) 제4조 제3항

공간정보의 기본요소를 관할하는 연방과 각 주의 행정기관은 공 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와 메타데이터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와 메타데이터는 상호 호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메터데이터에는 지리 적 위치정보, 품질, 분류등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b) 공간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 야 한다.
 - i) 키 워드,
 - ii) 유형화,
 - iii) 지리적 위치,
 - iv) 질적 징표,
 - v)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로의 접근 에 대한 제한 사항 및 그 제한의 근거,
 - vi) 접근과 활용을 위한 조건 및 경우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금전 급부의 조건,
 - vii) 수집, 운영 또는 조달에 관한 소관 공간정보 보유기관
 - 4) 상호운영성(제8조)
- (a) 공간정보 데이터, 공간정보 서비스 및 메타데이터는 상호운영될 수 있게 제동되어야 한다.

- (b)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제14조의 규정을 통해 규율된다.
 - (5) 전자네트워크의 구축
 - 1) 공간정보인프라체계와 공간정보 포털(제9조)
- (a) 메타데이터, 공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와 넷서비스는 국가 공간 정보인프라체계의 구성요소로서 전자네트워크로 연결된다.
- (b) 이러한 전자 네트워크로의 접근은 연방 수준에서 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추구된다.
 - 2) 국가 상담소(제10조)

국가 공간정보인프라체계는 연방과 각 주의 국가지도위원회의 책임으로 추구된다. 국가지도위원회는 『유럽 공간정보인프라 지침』 제19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국가 교섭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과 각 주의 행정협정을 통해 규율한다.

- (6) 공간정보의 활용
- 1) 일반적 활용(제11조)
- (a)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서비스는 제 12조 제1항과 제2항의 유보 하에 공공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 (b) 법, 계약이나 제3국의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간정보와 메타데이터는 상업적 활용이든 비상업적 활용이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연방의 공간정보 보유기관은 상호 간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c)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서비스의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 2) 공익과 그 밖의 이익의 보호(제12조)
- (a) 제6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공간정보와 공 간정보서비스로의 공공연한 접근은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적 안전과 방위를 위한 보호대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b)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서비스(뷰서비스, 다운로 드서비스, 전환서비스, 전자거래의 처리를 위한 서비스)에 관한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서비스로의 공공연한 접근은 2014. 12. 22. 의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접근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c) 환경정보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법상의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예외와 함께 공간정보 보유기관, 각 주, 지방자치단체와 유럽연합회원국의 상응하는 기관, 상호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럽연합공동체의 조직과 시설, 그리고 국제협약을 통해 유럽 공동체와유럽연합회원국의 계약 상대방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서시스로의 접근 및 공간정보의 교환과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 i) 계속 중인 법정 절차의 진행, ii) 개인에 대한 청구권의 공정한 절차, iii) 형사 범죄, 행정위반죄 또는 규율 위반에 관한 조사의 진행, iv) 공적 안전을 위한 중요 보호 대상, v) 방위, 또는 vi) 국제관계.

(7) 보 칙

1) 규정 권한(제12조)

연방은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a) 이 법의 적용법위에 속하는 한, 『유럽연합 인프라구축 지침』제5 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8항 및 제21조 제4항 에 따른 규정의 시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b) 제11조 제3항에 따른 활용조건, 특히 활용 권리, 보증과 책임배 제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2) 시행(제13조)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연방 정보보호법

(1) 구 성

『연방 정보보호법(BDSG: Bundesdatenschutzgesetz)』은 『유럽 정보거래 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로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유통을 통해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 정보보호법』은 총칙(Allgemeine und gemeinsame Bestimmungen), 공공기관의 정보처리(Datenverarbeitung der öffentlichen Stellen),13) 비공공기관 및 공적 기업의 정보처리(Datenverarbeitung nichtöffentlicher Stellen und öffentlichrechtlicher Wettbewerbsunternehmen),14) 특별규정(Sondervorschriften), 보칙(Schlussvorschriften)과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정보보호법』은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를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구분하고 공공영역은 개인정보보호기구를 통해 통제하되, 민간

^{13) 『}동법』제2장인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서는 정보처리의 기초, 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보호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연방수임인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4) 『}동법』제3장인 비공공기관 및 공적 기업의 정보처리에서는 정보처리의 기초, 정보 주체의 권리, 감독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영역은 개인권리보호시스템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15)

이러한 『연방 정보보호법』은 『유럽 정보거래 지침』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체 법률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의 허용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은 원칙적으로 『연방 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개인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면전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조력 없이 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 관련 정보의수집이 행정기관의 임무나 업무목적이거나 이를 정보 주체의 면전에서 수집하기에는 정보 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은 크게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조력이 없어도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한편 개인 관련 정보가 수집된 경우에 정보 주체가 이미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기관은 i) 책임기관의 명칭, ii) 수집, 가공이나 활용의 목적, iii) 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의 양도에 관해 크게 문제시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정보 수령자의 유형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 주체의 동의는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다. 또한 정보 주체는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이 예정하고 있는 목적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절한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¹⁵⁾ 최근 독일법원은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서비스가 이메일계정 등의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반한다고 판결하여 페이스북에서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해야 했다.

고지 받아야 한다. 만약 정보 주체의 동의가 다른 설명과 함께 서면 으로 수여되었다면 그 동의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야 한다.

(4)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위원의 임명

개인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은 서면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5)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가 정보 수집·가공이나 활용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권리, 정정권과 정보의 해소나 차단권은 법률행위를 통해 배제되거나 제한 될 수 없다.

(6) 무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관할 기관이 『연방 정보보호법』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활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기관이나그 기관의 담당자는 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관이 주어진 사정 하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독일 지적법

(1) 개 관

독일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영은 각 주의 권한에 속한다.16) 따라서 독일의 16개 주는 그 명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¹⁶⁾ 주법을 정하고 있는 16개 주는 Baden-Württemberg, Bayern,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n,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만,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예컨대 Baden-Württemberg 주는 측량법(Vermessungsgesetz), Bayern 주 · Brandenburg 주 · Bremen · Nordrhein-Westfalen 주, Saarland 주 · Sachsen 주·Schleswig-Holstein 주는 측량 및 지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Liegenschaftskataster), Berlin · Hamburg는 측량체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messungswesen), Niedersachsen 주·Rheinland-Pfalz 주는 공적 측량체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amtliche Vermessungswesen), Hessen 주는 공공 측량체계 및 공간정보체 법률(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Vermessungs-Geoinformationswesen), Sachsen-Anhalt 주·Thüringen 주는 측량 및 공간 관한 법률(Vermessungs- und Geoinformationsgesetz), 그리고 Mecklenburg-Vorpommern 주는 공적 공간정보와 측량체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mtliche Geoinformations- und Vermessungswesen)이라는 명칭으로 지적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지적법을 자 세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법률 의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14.7.22.에 개정된 바이에른 주의 지적 법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구 성

바이에른 주의 『측량 및 지적에 관한 법률(Vermessungs- und Kataster Gesetz: VemKatG)』은 제1장 바이에른주 측량(Landesvemessung), 제2장 지적공부(Liegenschaftskataster)와 제3장 공통규정(Gemeinsame Vorschriften) 으로 구성된 16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 Sachsen-Anhalt, Schleswig-Holstein과 Thüringen이다.

(3) 바이에른주 측량

바이에른주의 측량체계(Landesvermessungswerk)는 일반적인 바이에른 주의 촬영을 위한 측지기초의 제공·유지, 바이에른주 지역의 촬영,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형도의 작성과 주 항공사진집의 운영을 그 임무로 하며, 바이에른주 측량 결과의 총체(Gesamtheit)를 바이에른주 측량체계에는 기준점 영역(Lagefestpunktfeld¹⁷⁾), 수준점 영역(Höhenfestpunktfeld), 좌표위치화 작업(Positionierungsdienst), 중력점 영역(Schwerefestpunktfeld), 바이에른주 지형촬영(die topographische Landesaufnahme), 항공사진 정보시스템(Luftbildinfomationssystem), 공적 지형지도 정보시스템(das amtliche topographisch-kartografisch Informationssystem)과 공적 지형도 제작(die amtlichen topographischen Kartenwerke) 등이 포함되며, 바이에른주 측량체계를 기초로 소축척도(Übersichtskarte), 주변도(Umgebungskarte)와 특수도(Sonderkarte)가 제작된다.

이러한 바이에른주 측량체계에는 공개성과 전문기술 발전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개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 하여야 한다.

한편 모든 관청은 바이에른주 측량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서류의 열람 요청에 대하여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열람에 대해서는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바이에른주 측량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류의 제공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법상의 자연인과 법인 역시 그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아직 공표되지 않는 바이에른 주 측량 결과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신청을 받게 되면

¹⁷⁾ Lagefestpunktfeld는 바이에른주 지도의 제작을 위한 기초 중의 하나로서, 원점 (Zentralpunkt)을 시작으로 삼각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이에른주 측량의 결과는 국가 측량 소관청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만 복제, 배포되거나 재양도될 수 있다.

(4) 지적공부

지적공부(Liegenschaftskataster)는 국가의 부동산을 기술(이는 토지대 장을 의미함)하고 묘사(이는 지적도를 의미함)한다. 이러한 지적공부 는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행정적 수요 와 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의 지적공부는 독일연방 부동산등기법(Grundbuchordnung)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공부(amtliches Verzeichnis der Grundstücke)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의미하는 부동산(Liegenschaft)은 토지 및 토지에 확고히 부착되지 않은 건물을 의미한다. 토지에 확고히 부착된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독일 민법 제9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지적공부는 지표의 공간적으로 경계된 부분인 필지(Flurstück) 단위로 등록한다.18)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 자와 일치하도록 이를 지적공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법 (Wasserrecht)의 공법적 규정이나 사법적 규정에 근거한 소유권의 변경 은 등기부에서 정정되기 이전에 지적공부에서 정정될 수 있다. 이에

¹⁸⁾ 독일에서 토지(Grundstück)과 필지(Flurstück)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의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 구별이 있지만 필지와 비교되는 토지의 개념은 등기부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필지는 지적공부 상의 토지 단위이다. 이러한 등기부상의 토지는 지적공부 상의 필지를 기초로 작성되는데, 등기부상의 토지는 지적공부 상의 필지를 기초로 작성되는데, 등기부상의 토지는 지적공부 상의 1필지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전형적 토지: Ideal Grundstück) 다필지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집합토지: Zusammengesetztes Grundstück). 이러한 필지와 토지의 구별에 관해서는 Holzer/ Kramer, Grundbuchrecht, C.H. Beck, 2. Aufl., 2004, S. 5ff; Twaroch, Liegenschaft und Recht,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2010, S. 10ff; Weirich, Grundstücksrecht, C.H. Beck, 3. Aufl., 2006, S. 18.

비해 부동산의 형상(Gestalt), 면적(Größe)과 장소적 위치(örtliche Lage), 지목(Nutzungsart)의 종류와 경계(Abgrenzung)¹⁹⁾에 관한 지적공부의 증명력은 공적 기관의 지적측량(Katastervermessung), 장소적 조사(örtliche Erhebung)와 그 밖의 지리 정보(sonstige Geodaten)의 결과에 근거한다. 즉, 이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지적공부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지적공부는 계속적인 운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못된 등록은 직권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은 소 유권의 경계를 확정하고 안정화하며, 지적공부의 유지와 갱신에 이바 지한다. 이러한 지적측량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의 지적측량은 크게 유지측량(Fortführungsvermessung)과 신규측량(Katasterneuvermessung)으로 구분된다. 이중 유지측량은 지적공부를 유지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토지 범위의 변경, 지목 경계의 변경과 건물의 존속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다. 여기서 건물의 존속에 대한 변경에는 건물의 신축, 개요도(필드스케치)에서의 존재하는 건물의 범위의 변경, 건물의 철거와 파괴 및 징세대장(Katastervortrag)의 변경을 야기하는 한 건물의 목적 변경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유지측량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실시되며, 측량에 대한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존속에 대한 변경과 관련한 유지측량은 직권으로 실시한다. 이에 비해 신규측량은 지적공부의 갱신을 위한 측량이다.

한편 모든 기관은 지적공부를 운영하는 기관이 지적공부를 유지하 기 위한 부동산의 이동(異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¹⁹⁾ 독일은 토지의 경계에 경계점을 표시하는데(소위 지상경계제도, 또는 경계점표시제도),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 919-920, 4. Aufl., C.H. Beck; Schöner/ Stöber, Grundbuchrecht, C.H. BECK, 2008, S. 579 참조.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지상경계제도에 관해서는 Steiner/ Kostkiewicz · Schwander · Woif(Hrsg.), Hand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Orell Füssli, 2006, S. 669. 참조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수익권자 역시 지적공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이동을 등록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지적공부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나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과 관련한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이를 담고 있는 목록을 전달받거나 또는 발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상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형상, 면적과 장소적 위치, 지목의 종류와 경계에 관해서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상술할 필요가 없다. 한편 경계점에 관한 기술적 기록(필드 스케치)은 재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속 산하기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공표되지 않는다.

(5) 공통 규정

바이에른주 측량, 지적공부의 설치·유지와 갱신, 지적공부의 유지와 갱신을 위해 필요한 측량은 국가의 임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국가적 측량과 지적을 위한 최상급 행정기관(Oberste Behörde)은 주 재무부 장관(da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이다. 이중 바이에른 주전체의 바이에른주 측량은 중급기관(Mittelbehörde)인 측량과 지리정보를 위한 주 소관청(Das Landesamt für Vermessung und Geoinformation)에서 담당하며, 주 재무부 장관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관련한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지적공부의 운영과 지적측량의수행은 원칙적으로 하급 기관(Unterbehörde)인 국가 측량 소관청(die staatliche Vermessungsämter)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경지정리와 관련한지적측량은 경지정리청이, 뮌헨 소유이거나 향후 뮌헨에서 취득할 예정인 뮌헨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뮌헨 측량 소관청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4. 최근의 동향

독일에서는 2010년에 구글이 공간정보의 취득을 위해 거리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거리 촬영이 개인의 공간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방정보보호법』과 『디지털 공간정보접근법』의 결합을 통해 개인의 공간정보를 보호해 왔던 종래의 방식에 입법상의 흠결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20) 즉, 종래 독일에서는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으로부터 공간정보에 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연방 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방식을 개인공간정보의 보호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개인공간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의 정보와는 달리 주로 위치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의 노출이 문제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 해 일반적인 정보보호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발 생한 것이다. 예컨대 거리촬영을 통한 개인의 공간정보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보호의 원리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우 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개인공간정보를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크게 3분하여 그 보호의 요건과 정도를 달리하는 입법안이 진행 중에 있다.²¹⁾ 이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개인 의 인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간정보, 그 자체로는 개인의 인격 과 관련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될 수 있는 공간정보와 개인의 인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공간정 보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지적공부 중 소유에 관한 정보는 일정 한 자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 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

²⁰⁾ Kummer/Frankenberger(2012), aaO. S.166.

²¹⁾ Kummer/Frankenberger, aaO. S.169f.

준의 정보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지적공부 중 좌표, 필지나 건물의 주소 등과 같은 소유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대체로다른 요소와 결합한 경우에만 개인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과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비해 그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인격과 관련 없는 기본공간정보는 누구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인격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 인격권과 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 및인격권과 관련이 없는 정보로 분류할 것인지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제 4 주제

프랑스에 있어서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

김 현 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I . 개 념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단순한 위치정보를 너머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특징과 유익함이 있다.1) 특히 도로,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하게이 활용하는 것은 국토이용, 환경보호, 재난·재해방지 기타 다양한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정보를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라 함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정의한다(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 즉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점, 선, 면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속성정보와 통합한 정보인 것이다.2)

¹⁾ 예컨대, 도로정보에 건물정보를 융·복합하거나, 유동인구정보까지 추가하면 다양한 상권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융합할 수 있고 그 이용범위는 매우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앞의 보고서, 3-4면.

²⁾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 8, 3면 참조.

○ 프랑스에서의 공간정보

프랑스에서의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일반적 공간정보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공간정보"라함은 현실 또는 가상,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일정 공간에 위치하는 물건 또는 현상을 그 크기와 축척에 상관없이 표시한 것으로서,3) 토지 위의 하나의 점, 도로와 같은 선형 인프라, 보호구역이나 도시와같이 일정한 면적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4) 다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간정보"라는 고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리"(géographique 또는 spatialisée)와 "정보"(donnée 또는 information)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지리정보"(donnée géographique)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규범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르면, "지리정보"란 특정 지역 혹은 지리학적 지역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통합환경법전 제L127-1조 1°).

Google Maps(구글), Bing Maps(마이크로소프트) 외에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지도, 항공사진, 지리정보 데이터에 대한 좌표 지리정보 접속 창구로서 Géoportail(이하 지오포털)라 불리는 웹사이트가 있는데,5)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방대한 지리정보의 발전이 정부와 기업을 포함하여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장차 중요한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6)

³⁾ 일반적으로 지리정보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대축척 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환경, 교통, 시설네트워크, 부동산 등의 정보를 통하여 공간 혹은 현상에 대한 묘사가 풍부해지는 특수한 주제에 관한 주제별 정보가 있다.

http://fr.wikipedia.org/wiki/Information g%C3%A9ographique

⁴⁾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⁵⁾ 즉, web 2.0 기술을 이용해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 브라우저 창에 나타난 지도를 사용자가 대화형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지도) 및 그와 연관된 정보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이다.

⁶⁾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지리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구역에 대하여 다양한 변수 또는 추적을 통한 각종 영향평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인구, 일자리 및 주변 환경의 기능에 따른 시설(역, 입체교차로, 병원, 탁아소 등)의 입지조건, 통행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의 조성, 도시계획, 부동산, 공공시설의 유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절차의 제공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로서 지속가능발전부의 장관은 지리적 양상과 환경에 관한 정보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게시하고 있으며,7)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인터넷을 통해 고유의 위치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리정보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8) 이러한 지리정보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활용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유럽의 INSPIRE지침의 국내수용과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정보에 대한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의 주요 방침은 다음 과 같다.9)

< 지리정보에 관한 프랑스 국가정책의 주요 축 >

- 유럽의 INSPIRE지침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의 시행
-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IGN) 및 지리광산연구국(BRGM)을 통한 지오포털(Géoportail) 사용의 확대
- 국가기관에 있어 지리정보 사용의 현대화 및 조화

⁷⁾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그르넬(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이후 설립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정보 창구, 자연의 위험및 대형의 기술적 지도 게시, 환경구역 또는 주거에 관하여 제공하는 각종의 정보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⁸⁾ 예를 들어 꼬뮌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 문화유산, 관광지, 상업지역, 교통 서비스, 지적도, 도시계획에 대해 소개를 하며, 또한 도 단위의 데 빠르트망들의 도의회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⁹⁾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Ⅱ 발전과정

1. 발생 - 地籍

프랑스의 공간정보, 즉 지리정보 또한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적 (地籍)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고 발전하여 왔다. 이는 토지 등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지적자료야말로 과세의 충실한 근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등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나폴레옹 지적 (Cadastre Napoleon)을 그 효시로 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정비하고 발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지적도들은 장차 토지구획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수정이나 정정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0) 때문에 지적의 불부합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조사와 업데이트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과 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따라 지적도는 점차 인터넷으로 구축되어 각 기관의 조세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축된 지적도들은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의 기초가 되었고 전국단위의 지적도를 위하여 각 지방의 규모에 따라 예산도 배정되기에 이르렀다.

2. 발전 - 지적의 전산화, 현대화

프랑스 지적의 현대화는 1965년부터 약 3차에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 되어 온 지적정보의 갱신사업(Mise à jour des Information Cadastrales,

¹⁰⁾ 박규용, 『프랑스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2, 9면.

MAJIC)로 표현된다. 즉, MAJIC의 제1단계(1965-1978), 제2단계 (1985-1990) 및 제3단계를 거치면서 프랑스 특유의 지적제도가 확립되었고, 그에 대한 전산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정보가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지적도의 전산화는 일반세무국의 정보처리업무에 관한 1995년 4월 26일자 아레떼에 따라 인터넷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지적도"라는 명칭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적도 전산화·현대화 사업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1년 프랑스전력공사(EDF), 가스공사(GDF), 통신공사(FT)와 일반세무국 간 협약을 통하여 지적도상의 도로, 건물에 대한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및 정보시스템 차원에서 지적전산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비, 인력, 시간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3. 변화 - 지오포털

지리정보에 대한 정보의 시각화 및 정보의 배포는 2006년 지오포털 (Géoportail)이라는 프랑스 공식사이트가 개설되면서 그 정점에 이르게된다. 지오포털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INSPIRE' 유럽지침의 의무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배포하는 플랫폼으로서 공적 지리정보자료의 배포, 환경정보자료의 공유 및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방 및 상호 호환성의 논리에 따라 구축된 지오포털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공공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오늘날 개인과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비된" 인프라로서 인정받고 있다.

정치적 의지의 산물인 지오포털은 영토의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부 에 접속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온라인행정(Administration en ligne, ADELE)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기술적 인프라와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 해 중앙정부인 '국가현대화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modernisation de l'État, DGME)의 지도 아래에 (당시) '국립지리연구소'(Institut géographique national) 및 '지리광산연구국'(Bureau de Recherches Géologiques et Minières) 두 곳의 지원과 협력으로 구축되었다.

지오포털은 지리적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다시 말해서 해외 프랑스 령을 포함한 국내 영토 전체에서 공적이고 통제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기에,11) 상시 업데이트를 통하여 신뢰할만하고 잘 구비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공공정책과 영토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가 되며,이러한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지오포털은 위치측정(구역, 주소 등)의 단순한 작업 외에 영토의 정보에 대한 동시영상화 작업에 대한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지오포털은 각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하여 다원적 출처로부터 얻은 공적 이익을 위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IGN의 전산화된 지도에서 인터넷 지리정보자료(항공사진, 축척별 지도, 건물 및 토지구획 표시, 수로망, 고도, 망, 행정구역 경계, 장소의 명칭 등 약 775,739건)와 협력기관의 책임 하에 제작된 수많은 정보자료(자연공간, 보호구역, 토지점유 구획정리, 지질구조, 연안지대의 표시, 조수예보, 역사비디오, 민감한 도시지역 혹은 비관세구역, 위험노출지역, 자연 혹은 문화유산 등)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 현재 90가지 주제정보를 2차원(2D) 방식으로, 26개의 주제정보에 대하여 3차원(3D)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오포털은 자체적으로 지리정보자료를 보충하지만, 부수적으로 더 좋은 가독성을 부여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기구, 공동체 혹은 협회단체에 개방된다. 특히 '지리정보 공개 컨소시엄'(Open Geospatial

¹¹⁾ Sophie Couturier, Le géoportail - le portail des territoires et des citoyens, L'IGN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IGN, p.1. http://ign.fr/publications-de-l-ign/Institut/espace_presse/fiches_grenelle/le-geoportail.pdf

Consortium, OGC)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정보자료를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고, 각 협력기관은 그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통제한다. 이는 정보자료의 접속을 공유하고 온라인 서비스 업무를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IGN소장, BRGM소장, 중앙정부의 시설부, 자연보호부 및 농업부의 각 세 사무국장이 2006년 6월 21일에 서명한 지오포털 헌장(Charte du Géoportail)에 의하면, "지오포털은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폭넓게 개방된 출입구를 마련하고 여기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특성과 수단을 알리며 이를 시각화 및 상호시각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 대중과 전문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 그 사용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지오포털을 통한 목록작성 및 시각화에 대한 정보데이터 제작자의 경우도 무료이다."

반면에, 위 헌장은 "지오포털은 IGN사이트와 BRGM사이트의 각 정보데이터 제작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분명하게 차별화한다. 현행 규정을 기반으로 기술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데이터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사이트를 개방하고 상호운용(호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보데이터 제작자에 의해 개발되고 온라인으로 게시된 다양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상호시각화는 동일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어떤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전체의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격의 서버들에서 조작될 수 있다. 정보데이터의 제작자는 그 데이터의 소유자가 되며, 제작자가 선택한 자체의 인터넷 사이트, 모든 사이트나 창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자성에 관하여도 보장한다.

Ⅲ. 추진체계

1.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MEDD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지적(地籍)은 과제의 발전역사와 같이 하며 그 집행을 주도해 온 정부부처는 재정경제부(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의 공 공재정총국(DGFiP,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였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경우, 이것은 과세목적을 가진 지적이나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종합정보로서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정보이기에 그러한 공간정보를 조사하고 구축하는 주체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한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이러한 공간정보의 구축을 관할하는 중앙부처는 환경과 기술, 국토 전반에 관한성격을 가진 임무를 추진하는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 (MEDDE, 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이하 지속가능발전부)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공조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처 간 협력사례가 드문 우리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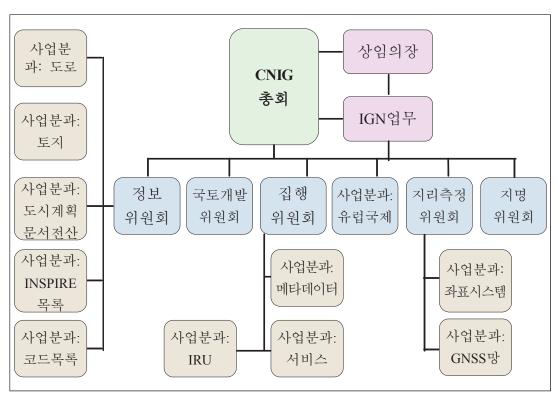
2. 국가지리정보위원회(CNIG)

국가지리정보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géographique, 이 하 CNIG)는 지속가능발전부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지리정보 분야에 있어서 관련 주체 간 업무조정 및 이들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등 대한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하며, 지리정보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1985년 창설되어 2011년 1월 31일자 데크레 제2011-127호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정부 정책을 명확히 하는 외에, 지리정보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호환을 보장하고, 유럽 내에서 지리정보의 배포·처리·활용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지리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럽위원회의 지침, 즉 INSPIRE의제18조 및 제19.2조에 규정된 국가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12)

위원회는 지리정보 분야에 개입하는 각계의 대표, 즉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꼬뮌간 협력을 위한 공공시설법인, 지리정보에 관련된 기업 및 전문가, 민간협회, 국가계획에 참여하는 조합근로자,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 총 35인으로 구성된다.

< 지리정보위원회(CNIG)의 조직 >



출 처: http://cnig.gouv.fr/?page id=620

¹²⁾ http://cnig.gouv.fr/?page_id=843

3.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IGN)

유럽 각국은 INSPIRE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포털을 하나 또는 다수 가질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지오포털(http://www.geoportail.gouv.fr/) 이라는 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구축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지오포털은 프랑스 공식의 공적 공간정보 서비스제공 웹사이트로서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이하 IGN)가 주축이 되어 지리광산연 구국(BRGM)와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지오포털의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보장하는 서비스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13) 지오포털은 2006년 6월 23일부터 모든 네티즌에게 다양한 차원으로 프랑스 영토에 대한 항공사진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Ⅳ. 관련 법제 - 통합환경법전 법률 및 시행령

1. 유럽의 INSPIRE지침

프랑스를 위시한 주요 유럽국가에서는 지리정보의 구축 및 확산이행정기관을 위해 이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정보, 특히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리정보의 대규모 개방이라는 목표 하에 2007년 5월 유럽을 환경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 2007/2/EC), 소위 INSPIRE를 수립하였다. 동 지침은 기술적인 원칙을 통하여 특화된 주제정보로서 환경적 수단을 필요로하는 34개의 공간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규범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채택하도록 하였다.14)

¹³⁾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Le-Geoportail-un-service-mis-en.html

이 지침은 환경과 관련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오르후스 협약 (Aarhus Convention) 이후, 각 국가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게시하여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를 제작하도록 하고 다른 편으로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Aarhus협약 및 지침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INSPIRE지침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리정보 분야에서 조직, 구조 및 시행방식을 현대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INSPIRE지침은 이미 그 전부터 시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의 지리정보를 웹으로 제작하기 시작오고 있었던 것을 집대성 하여 제도화한 것이지, 실제로 새로운 방향이나 움직임을 창설하거나 어떠한 형성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5)

2. 프랑스의 통합환경법전

프랑스의 공간정보 관련 법제는 유럽연합의 INSPIRE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전환)하는 것을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16) 그리하여 동 지침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통합환경법전』 (Code de l'environnement) 내에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 국내법으로의 편입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EU규범의 적용규정에 관한 2010년 10월 21일자 오르도낭스¹⁷) 제

¹⁴⁾ http://INSPIRE.ec.europa.eu/

¹⁵⁾ 지침의 시행은 단지 어떤 비용의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투자를 의미한다. 유럽위원회가 주도하는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투자의 회수 기한을 6개월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의 축소, 보호정책 및 환경 추적(넓은 의미에서 위생적 측면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최상의 효율 및 정보데이터 의 복사 감소와 같이 수많은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신속하게 거두게 되었다.

¹⁶⁾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¹⁷⁾ 오르도낭스(Ordonnance)는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률명령"으로서

2010-1232호"18)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 주요사항은 환경법전의 법률 부분 제L.127-1조 내지 제L.127-10조에 신설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법전 외에 2011년 3월 1일과 5월 5일자인 두 개의 데크레가 공포되었는데, 이는 환경법전의 시행령 부분의 제R.127-8조 내지 제R.127-10조에 포함됨으로써 프랑스법제에 대한 INSPIRE 지침의적용은 현재 "완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9)

이하의 환경법전에 포함된 규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INSPIRE지침에 규정된 사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프랑스 환경법전 중 지리정보인프라 관련 규정의 체계 >

- 법 률 -

제 1 편 총 칙

제 2 부 정보 및 시민의 참여

제 7 장 지리정보인프라

제 1 절 총칙(제L.127-1조)

제 2 절 메타데이터(제L.127-2조)

제 3 절 지리정보 시리즈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제L.127-3조)

제 4 절 망서비스(제L.127-4조 ~ 제L.127-7조)

제 5 절 행정기관간 공유(제L.127-8조 ~ 제L.127-9조)

제 6 절 기타규정(제L.127-10조)

- 시행령 -

제 7 장 지리정보인프라(제R.127-8조 ~ 제R.127-10조)

[&]quot;정부는 … 일정기간에 대하여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의 …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프랑스 헌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프랑스의 독 특한 규범 형식이다.

¹⁸⁾ 환경분야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권한 적용 다양한 조치에 관한 오르도낭스 제 2010-1232호(Ordonnance n°2010-1232 du 21 octobre 201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n matière d'environnement).

¹⁹⁾ Point de contact français, Rapport de la France sur la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INSPIRE pour la période 2010-2012, INSPIRE, 15 mais 2013, 4/38.

프랑스 환경법전의 총칙 중 제2부는 "정보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하여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인 제7장이 지리정보시스템 (Infrastructure d'information géographique)라는 표제로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규정의 내용은 생략하며, 다만, 총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언급한다. 즉, 통합환경법전은 지리정보체계에 있어서 그것은 (i) 행정기관 혹은 그의 명칭 하에서 관리되고, (ii) 전자적 양식을 통하여, (iii) 프랑스가 소유하거나 그역량을 행사하는 국내외 지역에서, (iv) 유럽공동체에서 지리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2007년 3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지침 (INSPIRE) 2007/2/CE 부록I, 부록II에 명시된 한 개 혹은 다수의 주제에 관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사점 : 관계 기관의 협력 내지 궁조의관점에서

공간정보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종합정보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개별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축적되어야만 양질의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자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초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주무부처(지속가능발전부)와 관계부처(농업부)간 공조연구를 통하여 정보구축에 필요한 목적과 수단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오포털의 구축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진 BRGM과 공공시설법인인 IGN이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배려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 간 나아가 부처와 공공기관 간 공조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다양한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즉, 관리기관에서 일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의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부처와 관계기관 간 업무관계가 매우 공조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위 공간법상의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기관은 공간정보라는 전체적 관점이아닌 임의적 필요에 의한 정보만을 주무부처와 공유하게 되고, 그러한 협력을 전제로 한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현실성, 신속성에서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간정보법령에 제시된 국토부와 타부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 강행적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령의 성격에 따라 규정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장차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바, 향후 국토공간의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하여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 8. 박규용, 『프랑스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2.

Sophie Couturier, Le géoportail - le portail des territoires et des citoyens, L'IGN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IGN.

Point de contact français, Rapport de la France sur la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INSPIRE pour la période 2010-2012, INSPIRE, 15 mai 2013, 4/38.

http://fr.wikipedia.org/wiki/Information g%C3%A9ographique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 http://cnig.gouv.fr/?page_id=843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Le-Geoportail-un-service-mis-en. html

http://INSPIRE.ec.europa.eu/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nformation-geographique-des.html